

第184回國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5號

國會事務處

日時 1997年7月23日(水)
場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 保護 등에 관한 法律 中 改正 法律案(계속)
2.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 保護 등에 관한 法律 中 改正 法律案(계속)
3.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 保護 등에 관한 法律 中 改正 法律案(계속)
4. 性暴力犯罪의 處罰 및 被害者 保護 등에 관한 法律 中 改正 法律案(代案)(계속)
5. 開發 利益 還收 에 관한 法律 中 改正 法律案
6. 宅地 所有 上限 에 관한 法律 中 改正 法律案
7. 韓國 道路 公社 法 中 改正 法律案
8. 大韓 住宅 公社 法 中 改正 法律案
9. 土地 管理 및 地域 均衡 開發 特別 會計 法 中 改正 法律案
10. 貨物 自動車 運輸 事業 法案
11. 韓國 教育 課程 評價 院 法案
12. 私立 學校 法 中 改正 法律案
13. 벤처 企業 育成 에 관한 特別 措置 法案
14. 産業 標準 化 法 中 改正 法律案
15. 에너지 利用 合理化 法 中 改正 法律案
16. 海外 資源 開發 事業 法 中 改正 法律案
17. 大韓 鑛業 振興 公社 法 中 改正 法律案
18. 意匠 法 中 改正 法律案
19. 商標 法 中 改正 法律案
20. 生命 工學 育成 法 中 改正 法律案
21. 通信 開發 研究院 法 中 改正 法律案
22. 소프트웨어 開發 促進 法 中 改正 法律案
23. 電波 法 中 改正 法律案
24. 郵便 法 中 改正 法律案
25. 電氣 通信 工事業 法 改正 法律案
26. 産業 災害 補償 保險 法 中 改正 法律案
27. 雇傭 保險 法 中 改正 法律案
28. 勤勞者 의 生活 向上 斗 雇傭 安定 支援 에 관한 法律案
29. 社會 福祉 事業 法 改正 法律案
30. 老人 福祉 法 改正 法律案
31. 生活 保護 法 中 改正 法律案
32. 韓國 韓醫學 研究所 法 中 改正 法律案
33. 枯葉 劑 後 遺疑 症 患者 支援 등에 관한 法律 中 改正 法律案

審査된 案件

5. 開發 利益 還收 에 관한 法律 中 改正 法律案(韓利憲·金忠一·徐勳·趙鎮衡·金榮駟·張永喆·玄敬大·

金杞載・金鎮載・李國憲・李康斗・白南治議員外 10人 發議)	3面
6. 宅地所有上限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韓利憲・金忠一・徐勳・趙鎮衡・金榮駟・張永喆・金杞載・金鎮載・李康斗・白南治議員外 10人 發議)	3面
7. 韓國道路公社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3面
8. 大韓住宅公社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3面
9.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3面
10.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案(政府提出)	3面
11.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政府提出)	16面
12.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16面
13. 벤처企業育成에 관한特別措置法案(代案)(通商産業委員長 提出)	21面
14. 産業標準化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23面
15. 에너지利用合理化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23面
16. 海外資源開發事業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23面
17. 大韓鑛業振興公社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23面
18. 意匠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23面
19. 商標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23面
5. 開發利益還收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韓利憲・金忠一・徐勳・趙鎮衡・金榮駟・張永喆・金杞載・金鎮載・李康斗・白南治議員外 10人 發議)(계속)	25面
6. 宅地所有上限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韓利憲・金忠一・徐勳・趙鎮衡・金榮駟・張永喆・金杞載・金鎮載・李康斗・白南治議員外 10人 發議)(계속)	25面
7. 韓國道路公社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25面
8. 大韓住宅公社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25面
9.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25面
10.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案(政府提出)(계속)	25面
11.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政府提出)(계속)	25面
12.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25面
13. 벤처企業育成에 관한特別措置法案(代案)(通商産業委員長 提出)(계속)	25面
14. 産業標準化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26面
15. 에너지利用合理化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26面
16. 海外資源開發事業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26面
17. 大韓鑛業振興公社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26面
18. 意匠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26面
19. 商標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26面
29. 社會福祉事業法改正法律案(代案)(保健福祉委員長 提出)	28面
30. 老人福祉法改正法律案(代案)(保健福祉委員長 提出)	28面
31. 生活保護法中改正法律案(代案)(保健福祉委員長 提出)	28面
32. 韓國韓醫學研究所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28面
14. 産業標準化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35面
15. 에너지利用合理化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35面
16. 海外資源開發事業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35面
17. 大韓鑛業振興公社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35面
18. 意匠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36面
19. 商標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36面
20. 生命工學育成法中改正法律案(李祥羲・徐廷和・朴成範・崔秉烈・金炯旣・朴憲基・劉容泰・吳陽順・金浩一・金武星・尹源重・白南治・金道彦・金明燮・黃性均・張永喆・黃圭宣・金泰鎬・權英子・金重緯議員 發議)	36面

21. 通信開發研究院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36面

22.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36面

23. 電波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36面

24. 郵便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36面

25. 電氣通信工事業法改正法律案(政府提出) 36面

26. 産業災害補償保險法中改正法律案(權哲賢議員外 24人 發議) 45面

27. 雇傭保險法中改正法律案(李康斗議員外 20人 發議) 45面

28. 勤勞者의生活向上科雇傭安定支援에 관한法律案(政府提出) 45面

20. 生命工學育成法中改正法律案(李祥義·徐廷和·朴成範·崔秉烈·金炯旣·朴憲基·劉容泰·吳陽順·金浩一·金武星·尹源重·白南治·金道彥·金明燮·黃性均·張永喆·黃圭宣·金泰鎬·權英子·金重緯議員 發議)(계속) 46面

21. 通信開發研究院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46面

22.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46面

23. 電波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47面

24. 郵便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47面

25. 電氣通信工事業法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47面

33.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47面

1.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權英子·林鎮出·吳陽順·金映宣議員外 149人 發議)(계속) 47面

2.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申樂均·李海瓚·鄭喜卿·秋美愛·韓英愛·金한길·李聖宰·朴相千議員外 71人 發議)(계속) 47面

3.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鄭相千·趙鍾奭·咸錫宰議員外 46人 發議)(계속) 48面

4.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法制司法委員長 提出)(계속) 48面

(14시29분 개의)

○委員長 姜在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법제 사법위원회를 開議합니다.

- 5. 開發利益還收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韓利憲·金忠一·徐勳·趙鎮衡·金榮駟·張永喆·玄敬大·金杞載·金鎮載·李國憲·李康斗·白南治議員外 10人 發議)
- 6. 宅地所有上限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韓利憲·金忠一·徐勳·趙鎮衡·金榮駟·張永喆·金杞載·金鎮載·李康斗·白南治議員外 10人發議)
- 7. 韓國道路公社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 8. 大韓住宅公社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 9.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 10.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案(政府提出)

○委員長 姜在涉 의사일정 제5항 開發利益還收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제6항 宅地所有上限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제7항 韓國道路公社法中改正法律案, 제8항 大韓住宅公社法中改正法律案, 제9

항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제10항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5호 부록에 실음)

건설교통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서 10항까지 4개 법안에 대해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존경하는 姜在涉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국민의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건설교통분야의 각종 시책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고속국도의 확충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자본금을 증액하고 土地管理 및 地域均衡開發 特別會計制度를 개선하

는 한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免許制에서 登録制로 전환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전면개편함으로써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다양한 수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국회에 韓國道路公社法中改正法律案, 大韓住宅公社法中改正法律案,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案 등 4개 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韓國道路公社法中改正法律案은 첫째, 1993년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조원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20개 노선 1,885km의 고속국도 건설로 금년말이 되면 납입자본금이 4조8,200억원에 달해서 고속국도를 계속 신설·확장하기 위해서는 법정자본금의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현행 법정자본금 5조원을 10조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의 건설·유지관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한국도로공사의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된 토지에 대한 대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大韓住宅公社法中改正法律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89년 대한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조원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로 1996년말 현재 납입자본금이 3조4,627억원에 달하여 법정자본금을 증액하지 아니하고는 賃貸住宅의 건설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정자본금을 현행 4조원에서 8조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대규모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社債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를 資本金과 積立金을 합제한 금액의 2배이내에서 4배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한주택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50만원이하의 罰金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1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하도록 하여서 벌금과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地域均衡開發事業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

特別會計의 자금을 용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투자기관이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동 특별회계자금을 용자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와 토지시장의 수급조절용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 업무를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다른 特別會計法과는 달리 이 법에는 剩餘金을 다음 연도 세입에 移入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剩餘金移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다른 법과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주와 화물운송사업자간에 단순히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自動車運送仲介·代理業을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에 통합을 해서 운송단계를 줄이고 다단계운송주선행위 등 운송원가를 높이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현재 免許制로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登録制로 전환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認可制로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자율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넷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화물이 인도기간을 경과한 후 3월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멸실된 것으로 보아서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해서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을 화물터미널·공동차고지 등 물류거점시설의 확충에 사용하도록 하고 여섯째,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영차고지를 설치해서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4개 법률안은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신설·확장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화물운송사업의 자율성의 증대와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서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제·개정이 시급한 법률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在涉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專門委員 李文載 먼저 宅地所有上限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유인물 15페이지 안 제10조제8항에서는 신탁을 원인으로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宅地取得許可가 필요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내용은 그 성격상 8항으로 하는 것보다 제10조의2로 독립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별개의 조로 하였습니다.

16페이지, 개인의 택지취득허가기준을 규정한 안 제11조의 제2항에서 택지취득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인 사업자의 범위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제3항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법인의 택지취득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2조의 제2항에서도 같은 취지로 등록에 관한 사항은 떼내서 제3항으로 독립시키면서 등록에 관하여 제11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조문을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배열시켰습니다.

17페이지, 안 제20조제1항제4호의2에서 그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특정하면서 법문표현을 제4호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 안 부칙 제2항에서 負擔金을 면제해 주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개정안의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원래 이 개정안이 97년 3월의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전제로 최초로 부담금이 부과된 92년3월2일부터 5년치의 부담금이 납부되면 97년3월1일 이후의 택지소유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97년도분 부담금부터 면제해 준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됨으로써 97년도분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거나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97년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1997년3월 이후의 택지소유분에 대한 부담금부터 면제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경미한 수정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案은 체계·지구상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韓國道路公社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인물 13페이지, 안 제13조의2의 내용은 한국도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長으로부터 土地收用法上的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다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조의 제목이 '權限의 委託'으로 되어 있어 마치 한국도로공사가 이 조항에 근거하여 공사의 일반적인 권한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조의 제목을 '代執行權限의 委託'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大韓住宅公社法中改正法律案, 유인물 14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안 제3조제6호 및 제7호의 배열순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사항부터 먼저 규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순서를 서로 바꾸었고 유인물 15페이지 안 제9조의 제목이 '다른 法令의 適用등'으로 되어 있으나 조문의 내용이 공사가 안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土地收用法 및 不動產登記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의제규정이므로 조의 제목을 이에 맞추어 '公社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제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안 제4조제3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입하는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또는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회계의 재산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 제2조제1호에서 토지관리에 관한 정의규정을 수정한 것과 제3항에서 토지매입근거를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볼 때 타당하다고 보아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 안 제2조제1호에서 이 법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정의하려고 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를 규정한 自動車管理法 제3조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자동차이므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의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20페이지, 안 제12조는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운송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改善命令의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열거된 사항외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개선명령으로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선명령의 대상을 전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되며 또한 안 제57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는 過怠料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개선명령의 대상이 되는 기타 사유의 대강을 大統領令으로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물 33페이지, 안 제34조에서 운수사업자가 설립하는 협회의 사업으로 규정된 사항중에 안 제8조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貨主에 의한 손해배상 조정하는 기능과 안 제9조3항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전전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자를 관리하는 업무 및 운전자의 근무기간 등을 기록·관리하는 업무가 누락되어 있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제42페이지, 안 부칙 제3조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개정안의 시행 당시 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알선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대해서 행한 신고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經過措置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를 포함시켰습니다.

기타 경미한 수정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중 朱書部分은 제5호 부록에 실음)

○委員長 姜在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燦柱委員 질의하기는 해야 할 것인데 법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는……

○委員長 姜在涉 아니, 그러니까 다 일괄해서 하십시오. 뭐든지 하시면 장관께서 답변하시면 되니까요. 우선 생각나는 것 질의하시고 또 생각나면 나중에 또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千正培 委員 질의하십니까?

○千正培委員 宅地所有上限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이것은 정부제출이 아니지요? 議員發議인가요?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예.

○千正培委員 현재 우리 전문위원 수정된 대로가 10조의2를 우리 법사위 전문위원이 만드신 것입니

까? 10조의 2를……

○專門委員 李文載 독립시킨 것입니다.

○千正培委員 그러니까 10조의2를 독립시키신 것이지요?

○專門委員 李文載 8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千正培委員 원래 그러니까 건교위에서 10조의2가 없었고 그것을 이제 10조의8항을 없애고 대신 10조2로 한 것이지요?

○專門委員 李文載 예.

○千正培委員 그러면 10조1항은 그냥 두신 것이니까? 원래 건교위 수정안대로……

○專門委員 李文載 예, 10조1항 6항은 법개정안이 아닙니다.

○千正培委員 지금 10조의2를 독립해서 두신 이 유가 信託法에 의한 신탁중에서도 1, 2, 3호에 정해진 특정한 자에 대한 신탁경우에만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專門委員 李文載 예.

○千正培委員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더라도 이외에 다른 자들에 대해서 신탁하는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되겠네요? 그런 취지에서 만드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보면 10조의1항이 宅地取得許可를 받아야 할 경우를 지금 규정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계약이라는 부분 다음에 괄호에 신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신탁계획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조1항에서 이미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그러면 수탁자를 가리지 않고 다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10조의2를 독립해서 이것을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10조1항을 그대로 두어 가지고는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조1항의 괄호 속에 든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제대로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朴燦柱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燦柱委員 우선 開發利益還收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修正案이 지금 마련이 되었는데 수정이 유를 보면 ‘遡及立法問題를 해소하고 기타 일부 불필요한 字句를 수정하려는 것임’ 그랬는데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소급입법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원래 불리한 것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소급입법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만일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을 경감시키려고 한다든지 한다면 附則에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종전의

경우 법개정 이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附則 2항 그것 자체를 삭제해야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리하게 법이 개정되면서 불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가뜩이나 住宅景氣가 불황이고 그런데 개발하는 토지소유자에게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建交委에서 수정안으로 나와 있기에 장관께서 답변할 성질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法司委에 있어 가지고는 원래 소급입법문제로 해가지고 부칙 2항을 집어넣겠다 하는 것은 오히려 다시 삭제를 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이것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朴燦柱委員 그러니까 소급입법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수정이유를 소급입법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종전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장관께서 이것은 책임지실 사항은 아니지요. 우리 법사위에서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姜在涉 전문위원께서 한번 답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전문위원이 朴燦柱 委員 질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燦柱委員 修正案 그것 자체를 削除를 해버리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改正案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장관께서 잘 마련하신 것을……

○專門委員 李文載 우리는 손을 안 댔는데요.

○委員長 姜在涉 그것이 아니고 建交委에서 수정을 했는데 수정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검토해서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朴燦柱委員 그리고 이왕이면 宅地所有上限에 관한法律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10조에서 ‘宅地取得許可’ 해가지고 10조7항이 개정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보면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土地去來契約許可라든지 申告

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거래계약허가라든지 또는 신고라고 하는 것은 택지취득허가하고는 立法目的이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택지상한을 초과하느냐 않느냐 그런 것은 원래 심사대상이 아니었습니까? 이 법개정안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얻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國土利用管理法上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얻어야 하고 또 거기에다 加外로 택지취득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본래는 모든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사하는 내용이나 또 宅地取得許可할 때 심사하는 내용이나 결국 그것이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朴燦柱委員 그러면 법만 다르지 立法趣旨는 동일하다는 것입니까?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입법취지도 별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燦柱委員 입법취지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한단계만으로 해결되게 하자 그런 취지라는 이야기입니까?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예, 간소화하자 하는 것입니다.

○朴燦柱委員 그것 참 요상하네요.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는 무엇입니까? 생략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宅地取得許可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일 개인이 많은 땅을 가지는 것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상 그것은 투기같은 것을 봉쇄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결국 대상이 실수요자, 토지를 취득하는 사람이란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아니냐 그래서 審査基準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 한 가지만 절차를 밟으면 다른 것은 생략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朴燦柱委員 그러면 혹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擬制를 해버림으로 해가지고 그것으로 해가지고 가령 투기의 위험성을 조장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建設交通部次官 金建鎬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차관이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법인이나

개인이나를 불문하고 어느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는 소유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입법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나 신고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실제로 實需要者가 택지나 토지를 취득하느냐 하는 것이 立法目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의 경우에 대도시에서는 200평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면 허가를 받아라 하는 것이 宅地所有上限에 관한法律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200평 이상이 허가를 받을 때는 그것이 실 수요자나 아니냐 하는 것을 다 봐서 택지에 대한 취득허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의 거래허가나 동일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한쪽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로 하면 토지거래 허가나 신고는 안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行政目的上 절차 간편화 차원에서 옳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燦柱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趙贊衡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贊衡委員 먼저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免許制에서 登錄制로 전환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수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화물차량이 총 몇 대나 됩니까?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200만대중에서 영업용이 16만대입니다.

○趙贊衡委員 그러면 物動量이 지금 16만대 가지고 부족합니까?

○建設交通部次官 金建鎬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 차관이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貨物自動車가 정확히 말씀드려서 총 대수가 195만8,000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영업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16만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위 다 자가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비중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자가용의 화물자동차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러면 지금 영업용이 16만대인데 영업용 16만대도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建設交通部次官 金建鎬 영업을 지금 빈차, 공차가 좀 있고 이것이……

○趙贊衡委員 내가 알기로는 지금 영업용 화물차량도 몰동량으로 봐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데다가 등록제로 해버리면 진짜 영업용 차량은 완전히 죽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실정을 잘 알고 계세요?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지금 趙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물운송시장이 작년부터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시장이 열려서 외국 화물운송회사와 함께 경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개방이 되면 우리 競爭力을 키워서 외국 화물운송회사하고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또 면허제로 해놓으니까 그것이 상당히 利權化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趙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200만대중에서 16만대가 영업을 하는데 영업을 하는 차량중에서도 영업을 안 되는 차량도 상당히 있고 또 그중에 영업을 되는 차량도 있고 화물량은 또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것인데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느냐……

○趙贊衡委員 아니, 장관께서 실정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16만대의 영업용 화물차량도 쉬는 차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登錄制로 만들어 버리면 진짜로 영업용 화물차량이 운영이 안 되고, 더구나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량도 개방이 되어서 외국차량이 들어 와서 운수사업을 할 때 지금 영업용 차량이 오히려 등록제를 하면 경쟁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등록제로 해서 폭을 넓혀서……

○趙贊衡委員 등록제로 하면 아무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資本力을 갖춘 새로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趙贊衡委員 바로 그것입니다. 등록제로 하면 감독을 못 하잖아요. 합리적으로 조정이 안 되지요. 아무나 등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登錄基準이 있지 않습니까?

○趙贊衡委員 그러니까 등록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면허제로 하는 것이 오히려 개방에 대비해 국가경쟁력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관께서 실정을 제대로 아시는지, 지금 화물업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화물자동차 메이커 측에 서서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영업용 차량도 물동량이 부족해 가지고 쉬고 있는 형편인데 등록제로 하면 완전히 죽으라는 뜻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면에 관한 것이니까 장관께서 실정을 좀더 알아 보시라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체계적으로 들어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 8조를 보십시오. 이 8조1·2항이 신설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제정안입니다.

○趙贊衡委員 그러면 지금 1항에 “운송사업자는 화물을 인수한 때부터 인도할 때까지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물이 인도기한을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 과거 이 조항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화물운수업자가 책임을 안 졌습니까?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종래에는 법이 없어서 運送約款을 가지고 운행해 왔습니다.

○趙贊衡委員 운송약관은 누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까?

○建設交通部次官 金建鎬 운수사업자가 3개월 내에 인도를 안 하면 멸실되는 것이 약관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趙贊衡委員 아니 1항, 이것이 사실은 손해배상 책임인데, 화물의 멸실·훼손 또 인도의 지연에 따른 손해는 운수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인데 이 조항이 있기 전까지는 아까 약관에 따라서 했다는데 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물류심의관입니다. 종전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화물을 확인하도록 해 놓고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해 놓고 운송약관에 의해 가지고 當事者去來에 의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趙贊衡委員 당사자 거래라면 운송사업자와……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화물을 맡긴 사람과 그 사이에서 사법상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그것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차질없이 화물을 싣고 나가 가지고 거기에 책임이 있을 때에는 운송사업자가 그 화물을 운송하는 동안에 책임지도록 해서……

○趙贊衡委員 아니 그 약관에 의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법제화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그것은 사업자의 의무적으로 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趙贊衡委員 사실 이것은 약관도 필요없는 거예요. 민법상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이 법에서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趙贊衡委員 아니 이것을 정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당연히 손해배상이 있는데 뭐하려고 법제화를 합니까? 더구나 과거에는 약관대로 했으면 약관대로 해도 되는 것이고 사실 약관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민법상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민법이 가장 기본법으로서 할 수는 있지만……

○趙贊衡委員 이것을 여기에다가 넣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과연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운송사업자의 경우에 지금 이 법제정으로 지입제를 폐지했지요?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종전의 지입제는 폐지되고……

○趙贊衡委員 수탁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 전에는 등록된 차량관리자하고 화주하고 계약해서 차량관리자가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종전에는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그 번호판 값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사오백만원을 받고 팔면 그 사람이 그 면허값을 치르고 다음에는 각종 납부금은 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쪽에다가 주고 이 사람이 다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자기명의로 자동차를 현물출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자기가 납부금을 내고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전에 사업면허를 받은 회사주인과 자기차량을 가진 차량주인……

○趙贊衡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런 손해배상 책임은 법인에 있습니까, 위탁자에 있다는 것입니까?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출자한 사람이……

○趙贊衡委員 그러면 수탁받은 사람을 운수사업자로 정의합니까?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사업자는 아닙니다. 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아니고 하나의……

○趙贊衡委員 여기에 지금 운송사업자는 이런 이런 책임을 진다는, 운송사업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사업면허를 받은 자입니다.

○趙贊衡委員 현물출자한 사람 아니지요?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예.

○趙贊衡委員 그러면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는 차량을 수탁받은 사람하고 화주하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그렇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런데 운송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그러한 사업면허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데 운송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물출자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趙贊衡委員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요. 이중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법체계상 문제가 많습시다. 그리고 이것을 구태여 법제화할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조 財政支援, “국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의 합리화 또는 공동차고지의 건설 및 확충 등의 사업에 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임의규정이네요.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이유가 있으면 할 수도……

○趙贊衡委員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세부적인 요건이나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다든가 대통령령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다든가 해야지, 그냥 선언적으로 법으로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항은 좋은데 할 바에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재정지원의 요건이라든가 또 절차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런 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든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현재 화물운송업의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송업과 달리 일반 물류기반시설에 대해서는 貨物運送法하고 流通團地開發促進法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

니다. 그러나 사업자라든가 경영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터미널 같은 데에 사업자가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趙贊衡委員 아니,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할 바에는, 지금 화물유통촉진법 36조를 보면 화물터미널건설 등의 소요자금의 일부를 용자하거나 부지확보를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항에서는 필요한 사항은 건교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시행규칙에는 아무런 규정도 없으니까 유명무실한 法案이 되어 버렸습니다.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여기의 재정지원은 공동차고지를 건설한다고 할 때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것을 하나 집어 넣었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33조, 협회 설립목적이나 절차를 정한 조항인데 33조제5항, “運輸事業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것이 애당초 왔다 갔다 해서 그 후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조합이 설립된 경우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고 강제규정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뒤에 바뀌어서 임의규정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의규정도 임의규정이지만 더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는 강제규정이었거든요. 이것이 협회 구성해 놓고 가입을 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협회 설립의 목적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협회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운수사업자는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部次官 金建鎬 次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업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모든 협회나 단체에 강제가입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 지금까지의 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내에서도 이제 협회나 조합의 가입을 강제가입으로 하지 말고 임의가입으로 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협회도 지금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협회가 공동사업을 하든가 또는 자기 會員社들한테 서비스를 높이면서 정보사업 등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회원사들이 다 협회에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협회도, 협회에서 앞으로는 회원들한테 여러

가지 福祉問題라든지 情報問題의 서비스를 높여 가면서 스스로 가입을 하게끔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정부내의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趙贊衡委員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금 그 전의 組合, 聯合會 명칭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현재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협회로 바꾸었고 현재의 연합회는 그대로 연합회 명칭으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합으로 했던 것은 옛날 초기에 실제 운영형태가 상호출자하는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조합으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운영형태로 보면 상호출자해서 조합원이 재산을 공동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회원들끼리 상호모임의 단체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협회로 바꾸었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리고 협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建交通部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千正培委員 제가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8조1항의 문제인데 장관께서는 이것이 民法上의 原則을 더 강조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상법 135조에 손해배상 책임규정이 있는데 상법 135조는 운송업을 하는 운송인의 책임규정인데 거기에는 오히려 이보다 훨씬 더 貨主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滅失 등등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적으로는 입증책임도 顛倒되어 있고 여러 가지 훨씬 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商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조1항은 민법에 있는 일반조항 정도를 베껴 놓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운송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화될 우려가 많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화물이 멸실된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에는 없지 않나……

○千正培委員 멸실 조항이 있지요.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기간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千正培委員 아니 그것은 2항 아닙니까? 저는 우선 1항입니다. 1항이 원칙적인 조항이고 2항은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개월 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 멸실한 것으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2항은 좋은데 1항은 이 條文이 들어감으로써 조금도 건교부측에서 생각하시고 있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1항을 든 목적은 첫째는 민법상이나 상법상에 있어서 그 행위에 대해서 당사자간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지만 運送事業을 하는 사람은 공공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千正培委員 아니 그 취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취지라고 하면 상법 135조를 여기다가 베껴 놓으세요.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은 1항, 2항이 연결되게……

○千正培委員 아니 그것은 입법 체계상의 문제이니까 저희들이 고쳐줄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1항은 불필요한 조문일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의 책임을 오히려 상법에 비해서 경감하는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다가 베끼고 싶으면 상법 135조를 베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자기 자신이 어떤 過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똑같은 말 같지만 입증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8조1항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조1항은 相續條項입니다.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그것을 신고하고 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이를테면 사망해 가지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이 사업자체가 免許制가 아니고 登錄制로 전환하면 등록하기도 쉽겠지만 당초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그 아들이나 딸중에서 그 業을 물려 받아서 계속 하겠다고 하면 신고만 하고 계속 그 등록이 유지되면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이 경우에 相續人 중에서 아무나 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상속인이 아들 딸이

여러 명 있으면 공동으로 이 업을 같이 해야만 되는 것이지……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상속법에 의해서 상속받은 사람이 등록을 해야……

○千正培委員 아니 그냥 민법상의 상속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유언없이 죽으면 아들 딸 심지어는 배우자까지 한꺼번에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그대로 써 놓은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운송업하다가 죽게 되면 아들 딸들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해야만 할 수 있습니까?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상속의 권한이 있는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그러니까 아들이 셋이 있으면 셋이 다 상속을……

○千正培委員 이 법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조문을 괜히 넣어 가지고 헛갈리게 합니까? 이것은 좀 검토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朴燦柱委員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선 6조에 있어서 “運賃 및 料金 등”은 자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認可制에서 申告制로 바뀐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율화를 추진한다고 하면 당연히 임금이나 요금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경쟁이 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朴燦柱委員 우리 나라 현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建交部라든지 정부에 있어서 가령 택시의 경우도 어떻게든지 간에 택시업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에 따라서 할증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가제를 신고제로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누구도 납득을 안할 것인데 솔직히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하는 의도가 뭘니까?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현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임금은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시장은 자율요금화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는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80원도 받고 때에 따라서는 110원도 받고 이렇게 자율적인 가격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율화되더라도 특별하게 많이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燦柱委員 이것으로 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부

담이 될 가능성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지금 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에서 컨테이너라든지 견인차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불리하도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도 상당히 높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외적으로 인가제를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朴燦柱委員 그러면 인가제하고 신고제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법에 나와 있습니까?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施行令에서 나올 것입니다.

○朴燦柱委員 아니 그러면 시행령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데 그 위임규정이 무엇입니까?

○建設交通部次官 金建鎬 6조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수사업자는”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말씀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있어서 신고를 받고……

○朴燦柱委員 좌우간 인가제하고 신고제를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고 또 23조에 보면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운송주선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더 낮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급줄 수 없다 하는 취지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건설업법의 경우에는 아예 하도급을 장려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좌우간 운송주선사업자가 대규모 사업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재정상태도 충실하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또 건설하라고 보는 그 밑의 단계에 있는 운송주선업자에게 재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굳이 막습니까?

오히려 대규모 운송주선사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한다면 대규모 운송주선사업자가 그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그보다 규모가 작은 운송주선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막아 버리는 것이 되어서……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저희가 그 다단계를 막는 이유는 현재 貨主가 운송알선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맡기면 그 사람이 100원을 맡으면 100원 그대로를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을 주어 가지고 80원, 70원, 60원 이렇게 막내려가 가지고 실지로 제 값을 받고 운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송사업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화주들은 화주들대로 逆으로 더 많은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화물을 운송하게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다단계를 막으려고 합니다.

○**朴燦柱委員**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건설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다단계를 전부 막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건설업의 경우는 그러면 재하도급을 주고 여러 단계로 하도급이 내려가는 경우에 있어서 거기는 부실하다고 해도 허용을 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건설업의 경우는 규모도 크고 그것을 한꺼번에 零細業者들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주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단계를 만들 필요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朴燦柱委員** 그리고 46조 “權限의 委託”을 보면 수정안이 의문이 드는데 원래 장관께서 할 때는 개정안은 업무중 일정한 업무는 협회 또는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정안에서는 專門檢査機關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교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문검사기관을 그렇게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만일 문제가 있다면 법사위에서 빼버리면 되지요.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여기에서의 전문검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안전 담당을……

○**朴燦柱委員** 아니 그러면 왜 그것을 원래 개정안에 안 넣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건교부에서는 전문검사기관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넣는 것이 좋겠지요.

○**朴燦柱委員**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46조1항, 47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46조1항을 보면 한정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 修正案에서는 포괄적으로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위임입법을 벗어나 무한정하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원래의 개정안대로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일정하게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저희가 原案에서는 일부 업무를 한정해 가지고 위탁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외에 위탁시킬 사항들이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燦柱委員**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47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手数料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건교부에서는 범위를 축소를 했는데 수정안에서는 확대를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의 46조는 지금 설명하신 것이 혹시 타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7조는 국민의 부담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무한정하게 확대해 버리는 이것도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수정안은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인가·허가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식으로 되어 버렸는데 단순히 인지첨부하는 문제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수료라고 하면 적어도 상당히 고액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것은 건교부에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건교위에서 확대시켜 놓으니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원래대로 돌아가는 식으로 하지요.

○**委員長 姜在涉** 그것은 소위에서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朴燦柱委員** 그러면 그것은 소위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公營車庫地를 위해서는 토지의 수용 및 사용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공공용지는 협의취득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개인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땅을 취득하게 합니까?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지금 현재 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가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주택가나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금을 마련해도 사실상 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님비(NIMBY)현상이라고 할까 다른 사업장에 땅을 못 구하듯이 차고를 기피하기 때문에 땅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차고를 확보해주는 방법 이외에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였고 그 차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다 해서 수용을 했는데

현재 土地收用法에서는 이 車庫收用에 관한 내용이 3조8호에 기타 법률에 의해서만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만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朴燦柱委員** 그것이 강제적인 취득인 수용까지 갈 것이 아니라 공공용지 취득에 있어서 협의취득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완화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으로 보아서 공영차고지 만든다고 해서 땅 뺏겨버리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建設交通部次官 金建鎬** 차관이 실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같은 것도 공영차고지를 하고 있어서 시장·군수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차고지의 경우에는 收用權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군수인 행정기관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를 일반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사용할 경우에 공영차고지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권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朴燦柱委員** 그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建設交通部次官 金建鎬** 이것은 공익사업입니다. 시장·군수인 행정기관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기 때문에……

○**朴燦柱委員** 이것은 小委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安商守委員** 저도 좀 물어봅시다.

○**委員長 姜在涉** 잠깐만요. 제가 가능하면 위원님 발언하시는데 제지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0여건의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슬기롭게 법안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은 물류심의관계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민법 상법하회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좋은 취지의 법안을 잘 가다듬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교섭단체 간사님들하고 의견일치를 보면 그 교섭단체 소속되시는 위원들은 이것이 소위에 가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뻥한 것을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해서 자꾸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商守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商守委員**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案 중에서 31조3항 단서만 물어보겠습니다.

‘收用 및 사용’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재결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31조3항 단서조항을 보면 “裁決申請은 土地收用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함에 있어서 정한 公營車庫地의 設置期間내에 행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재결신청기간을 特例條項을 둔 것 아닙니까? 특례조항을 두었는데 특례조항을 두다 보니까 더 단축을 해 놓은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특례조항 때문에 일반적인 토지수용법만 쳐다보다가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놓쳐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특례조항은 안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도 그것을 놓치는데 하물며 일반인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그것 때문에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일반적인 토지수용법과 비교해 가지고 재결신청기간이 늘어난 것입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것보다는 공영차고지가 끝나기 전에 재결을 해야지 만일에 완전히 된 다음에 재결을 하게 되면 권한을 못 찾을까봐……

○**安商守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통지를 하고 그때부터 土地收用期間이 보통은 아마 2개월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공영차고지를 수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차고를 만드는, 차고라 해 보았자 땅 뺏아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리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이 마칠 때까지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수용대상으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로 되어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예를 들자면 임야 같은 것을 뺏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기존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기간도 간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지에 따라서 건축물에 따라서 裁決申請期間이 그야말로 신속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의 경우는 아주 짧아질 것이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아주 길어질 것이고 이것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특례조항을 두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建設交通部物流審議官 池光植 수용하기 전에 협의에 들어갑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안 되면 수용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에 사실상 수용에 들어가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왜 기간을 그렇게 정해 주지 못했느냐 하면 긴 것은 긴 것대로 권리주체에게 많은 기간을 주기 위해서이고 짧은 것은 짧은 것대로 그 기간 내에 해야 그 권리주체를 행사할 수 있지 만약 끝난 다음에 해 버리면 다시 원상복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安商守委員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법은 일관성이라든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건축물에 따라서 裁決申請期間이 다르고 토지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일반 토지수용법하고도 달라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일반 토지수용법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在涉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 6, 7, 8, 9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이 오셔서 의결정족수가 되면 통과시키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은 법안심사제2소위에 회부해서 하도록 나중에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燦柱委員 韓國道路公社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정안 제13조의2 “代執行權限의 委託”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13조의2 수정안을 보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公社가 행하는 事業에 관하여 土地收用法 第77條의 規定에 의한 代執行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한의 위탁을 받는 사업의 범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수용과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것입니까? 토지수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생기면 土地收用法 第77조의 규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토지수용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朴燦柱委員 한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部長官 李桓均 예.

○朴燦柱委員 그러면 13조에는 토지수용에 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법 등에 관한 특례만 규

정되어 있지 토지수용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에 있어서 일반적인 장애가 생기면 장애제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포괄적인 위임규정이 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建設交通部道路審議官 李秉憲 도로심의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법 7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권한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재결을 받은 지상물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朴燦柱委員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13조의2, 그러한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해서 토지수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장애가 생기면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될 위험성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建設交通部道路審議官 李秉憲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재결을 받은 지상물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燦柱委員 그러면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公社가 행하는 사업을 좀 더 한정적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公社가 행하는 사업’ 이렇게만 규정을 해 놓으면 객관적으로 해석을 할 때 토지수용과 관련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3조라든지 거기에는 토지수용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建設交通部道路審議官 李秉憲 13조의2에 土地收用法 第77조에 의한 代執行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토지수용법 第77조에 의한 대집행이라는 것은 토지수용법 77조를 읽어 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處分으로 인한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期間內에 完了할 可望이 없는 경우 또는 義務者로 하여금 이를 履行하게 함이 顯著히 公益을 害한다고 認定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道知事·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은 起業者의 申請에 의하여 行政代執行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代執行할 수 있다」 이렇게 토지수용법 77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朴燦柱委員 그러니까 저는 다만 13조의2 표제에다가 ‘土地收用 경우에 있어서의 代執行權限의 委託’ 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姜在涉 朴委員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방금도 전문위원과

심의관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큰 문제가 있는 조항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따가 통과할 때 만약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질의는 종결합니다. 그리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定足數가 안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5항에서 9항까지는 이따가 저희들이 통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항은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고 취지도 아주 좋은 법안인 것 같습니다. 아직 국회가 내주까지 있고 법사위에서 법률적으로 잘 다듬어 드릴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한 것 중에는 일리가 있는 말씀도 있고 또 일리가 없는 말씀도 있습니다. 소위가 열렸을 때 오셔서 잘 설명해 주시고 우리도 법안을 잘 가다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政府提出)

12.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15시45분)

○委員長 姜在涉 의사일정 제11항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 제12항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部長官 安秉永 존경하는 姜在涉 委員長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력평가기능을 담당하던 國立教育評價院이 1997년12월31일 폐지되게 됨에 따라 동 평가원에서 담당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지험을 실시할 대체기관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과 학업성취의 평가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분리하여 수행함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5년5월31일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에서 위의 두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과 학업성취의 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초·중등교육의 개혁을 뒷받침함과 아울러 학생·학부모 및 교사 등에게 신뢰성 높고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韓國教育課程評價院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韓國教育課程評價院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각종 학력평가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둘째,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학업 성취기준 및 성취도 평가도구의 개발, 전국단위의 학력평가지험의 관리, 교육과정 및 학력평가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셋째, 임원으로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이사장·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넷째,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학력평가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정하고 다섯째, 그 목적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전국단위의 학력평가지험시행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 평가원의 임·직원과 원장의 위촉 또는 위탁을 받아 학력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지며,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외국대학 등에 대한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국민에게 국제적 수준의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중학교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에 한하여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새로운 해산사유로 추가하도록 하고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해산 당시의 학교법인이 정하는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첫째, 대학교육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외국인이 기본재산액의 2분의 1이상에 해

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해산한 學校法人의 解散 및 殘餘財産의 處分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 소속에 私學整備審査委員會를 두도록 하고 넷째,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산당시의 학교법인이 정하는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직무이탈로 인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정하여 期間制敎員을 任用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학교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在涉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專門委員 李文載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案 第4條는 평가원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규정이나 이는 案 第5條에 규정된 정관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였고 유인물 11페이지 案 第23條에는 원장의 위촉 또는 위탁을 받아 평가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罰則適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위촉 또는 위탁의 근거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案 第5條第2項으로 신설하였으며 그 외 법문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도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千正培 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千正培委員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에서 제일 마지막 조문이 過怠料條文인데 오늘 심사한 다른 법안도 보면 과태료를 일단 정부부처, 그러니까 장관이 부과를 하고 그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으로 다시 가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조문

의 과태료는 500만원이하인데 처음부터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정하신 것인가요?

○教育部長官 安秉永 이것은 법무부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千正培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법원에 가서 과태료처분을 받아야 되겠네요?

○教育部長官 安秉永 예, 그렇습니다.

○千正培委員 그런데 다른 법들하고는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 경우에 교육부장관이 먼저 과태료처분을 하고 그것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朴燦柱 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朴燦柱委員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第1條를 보면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의 教育課程을 研究·開發하고 각종 學力評價를 實施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학력평가라고 하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그 자체만 인정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教育部長官 安秉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최근에 학원 등이 모의학력고사를 보는 것과 같은 학력고사도 여기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신력을 갖고 학력고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朴燦柱委員 그러면 진짜로 문제네요. 사설학원에서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것이야 사업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에 의해서 국가가 또는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이 가령 중간고사라든지 학기말고사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학력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試驗問題를 出題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手數料를 받을 수 있게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그런 것입니까?

○教育部長官 安秉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수요자에게 교육에 관한 충실하고 공정한 정보를 부여하기 위해서 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공신력있는 기관이 公信力을 근거로 해서 학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朴燦柱委員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경우에 공신력이 있다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설기관에서 하는 것은 엉터리라는 말입니까?

○**教育部長官 安秉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이 研究開發과 學力評價를 연계지어서 전문가들이 연구에 바탕을 두어서 학력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설기관과는 다른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朴燦柱委員** 그러면 사설학원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인데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한다면 가령 학원들이 실시하는 학력평가의 경우에 있어서 물론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많고 또 그것이 종로학원이나 대성학원이나 중앙교육평가원이나 해서 그중 어느 것을 채택해서 시험보게 하느냐에 따라서 利權이 엄청나게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까지 제정해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설학원보다는 여기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 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에 어느 학교가 종로학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로 한다든지 하면 무슨 伏魔殿이 있지 않느냐 의심해서 트집잡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겁이 나 가지고 거기를 못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원이 낸 문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教育部長官 安秉永** 사설학원은 입시위주의 학력평가를 하는 곳이고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해서 학력을 높이기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燦柱委員** 문제만 그렇게 낸다고 질적으로 향상이 됩니까? 이것은 평가원에다 이권을 주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教育部長官 安秉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非營利 公益機關입니다.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학력평가를 하는 것이지 입시나 영리와 연계된 평가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는 현격하게 클 것으로 봅니다.

○**朴燦柱委員** 그러면 중앙교육평가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教育部長官 安秉永** 중앙교육평가원은 私設 評價機構이고 거기는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朴燦柱委員** 그런데 사실상 학력평가는 무료로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출제를 할 수 있는 교수진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를 주는 것이 되는데 사실상 教育放送 하면 거기의 강사로 선발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

권이 지금 고액과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비밀과외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이권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공신력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출제를 하거나 그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것으로 국가에서 공인까지 하는 것이 되는데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까?

○**教育部長官 安秉永** 없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인 행위의 일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朴燦柱委員** 장관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에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을 보면 안 제54조의4를 보면 “期間制敎員”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셈인데 거기에는 물론 휴직, 정직,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필요성 등에 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3년이라는 기간을 延長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간제교원을 연장까지 해 가지고 고용할 수 있다면 정상적으로 정규적인 사립학교교원을 확보할 필요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시직 공무원을 많이 두는 것이 공무원사회에 있어서도 부작용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도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教育部長官 安秉永** 기간제교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현재는 臨時敎員도 바로 그 이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휴직, 기타 사유에 의해서 기간제교원이 필요할 뿐더러 앞으로는 선택과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재량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특정교과를 위해서 필요한 기간제교원의 수요가 꽤 많아집니다. 이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朴燦柱委員** 솔직히 이야기하면 대학교의 경우도 정상적으로 조교수, 부교수, 교수는 거의 안 두고 인건비를 절약한다고 해서 講師制度를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기간제교원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퇴직금이 어떻게 될지 또는 임금인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규적인 교원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으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를 보호육성하고 또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뒷전에 두고 기간제교원으로 해서 사립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하면 문제 아닙니까? 오히려 저로서는 기간제교원 또는 임시직공무원 하는 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면 벌칙을 가한다든지

제재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허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教育部長官 安秉永** 이것은 教育公務員法이 개정돼서 거기에 명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립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일 따름입니다.

○**委員長 姜在涉** 朴委員長님, 질의하시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가능하면 법사위의 질의범위를 생각해 서 헌법위반이 있는지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자구에 문제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趙贊衡 委員長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贊衡委員** 법체계상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에 대한 수정안 제21조를 보면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해가지고 평가원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고 했고 제22조 罰則規定에는 “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한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2조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의 누설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公務上秘密의 漏泄罪는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法令에 의한 職務上 秘密을 漏泄한 때는 2年이하의 懲役이나 金庫 또는 5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고 되어 있어요.

○**教育部長官 安秉永** 원장이 위촉·위탁한 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입니다.

○**趙贊衡委員** 의제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평가원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했잖아요. 의제했을 경우는 刑法適用을 받는다는 말 아니에요?

○**教育部長官 安秉永** 그렇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러면 형법에 공무상비밀의 누설죄가 있던 말이에요. 그런데 별도로 22조의 벌칙을 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法律矛盾입니다. 그러면 형법은 배제하자는 거예요?

○**教育部長官 安秉永** 그런데 당사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趙贊衡委員** 공무원으로 의제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教育部長官 安秉永** 공무원으로 의제했다라도 공무원 자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趙贊衡委員** 공무원의제가 되면 벌칙적용에 있어서도 공무원으로 의제한 거예요. “형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공무원

으로 본다”고 해놓고 왜 형법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辛卿植委員** 담당국장이 설명을 자세히 해보세 요.

○**委員長 姜在涉** 이 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가 대답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安商守委員** 저도 함께 이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전문위원이 우리 安商守 委員長이 질의하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답변하세요.

○**安商守委員** 여기 조문이 새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빨간 것으로 한 것이 條를 맞게 바꾼 것이지요?

○**專門委員 李文載** 예.

○**安商守委員** 그러면 과태료조항이 23조가 되는 것입니까?

○**專門委員 李文載** 그렇습니다.

○**安商守委員** 그리고 19조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뜻이지요?

○**專門委員 李文載** 예.

○**安商守委員** 여기에서 제19조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지요?

○**專門委員 李文載** 예.

○**安商守委員** 다음에 지금 22조는 ‘秘密嚴守의 義務’ 이것이 형법규정하고……

○**專門委員 李文載** 이것은 형법보다는 벌칙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安商守委員**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특별한 규정이라는 뜻이지요?

○**專門委員 李文載** 예.

○**安商守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 “院長의 위촉 또는 委託을 받아 評價院의 業務를 수행하는 者 또는 수행하였던 者”까지 들어갔으니까 형법보다 범위가 좀 넓어졌네요? 그리고 21조의 公務員擬制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든지 뇌물죄라든지 이런 것을 상정한 것이지요?

○**專門委員 李文載** 예.

○**趙贊衡委員** 전문위원님, 22조의 벌칙이 처벌을 강화시켰다는 의미입니까?

○**專門委員 李文載** 예,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형법 제127조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년이하의 資格停止까지 처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벌금형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22조가 훨씬 가벼운데 그 22조를 가볍게 처벌하기 위해서 두는 거

예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專門委員 李文載** 自由刑의 최고형이 높아지면 강화되는 것으로……

○**趙贊衡委員** 자격정지도 없고 벌금형도 없는데요? 이것이 원안입니까, 수정안입니까?

○**專門委員 李文載** 이것은 우리가 손질한 것이 아닙니다.

○**趙贊衡委員** 형법 제127조는 벌금형도 없고 징역형 뿐입니다. 그리고 5년이하의 자격정지까지 있어요. 이 형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텐데 구태여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내 이야기는 22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강화된 것도 아니고 약화된 것도 아니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봐서는 벌금형이 없는 경우가 더 무섭습니다.

○**教育部長官 安秉永** 趙委員님,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법리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趙贊衡委員** 뭔가 소신있게 법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니요! 장관이 그것도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刑法에 적용이 있는데 구태여 벌칙을 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강화하려면 罰金刑도 두지 말아야지요. 또 5년이하의 자격정지를 10년이하로 하든가, 징역형 상한선만 1년 높여 놓고 그것이 강화시킨 것입니까?

○**教育部教育政策企劃局長 鄭相煥** 이 조문에 대해서는 정부안에서 법무부 의견을 받아서 조문화시켰습니다. 법리적인 문제는 조금 있다가 전문위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趙贊衡委員**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또 하나 내가 지적하했는데 “院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중에서 選任하되, 教育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이사중에서 선임하더라도 교육부장관이 승인을 안 하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사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렇게 해야지요. 직접 임명을 해버려야지 이사중에서 선임을 하는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법체계상 그렇다는 말이에요. 선임은 이사회에서 하고 승인은 教育部長官의 승인을 받으면 理事會에서 선임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教育部長官 安秉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다른 政府出捐研究所의 立法例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다른 모든 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러면 임명규정은 있는데 만일 원장이 잘못했을 때 면직시키려면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조항이 없네요.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教育部長官 安秉永** 임기가 3년으로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이사의 임기가 3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원장의 임기도 있어야 되고 免職規定도 있어야지요.

○**教育部長官 安秉永** 원장의 임기는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이사의 임기가 3년이라는 것이지 원장의 임기는 이사가 연임하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教育部長官 安秉永** 예, 그렇습니다. 이사의 임기가 3년입니다.

○**趙贊衡委員** 이사의 임기가 3년이지 지금 원장의 임기는 없어요. 그러면 이사의 임기하고 같다고 하든지……

○**教育部長官 安秉永** 원장도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趙贊衡委員** 내 얘기는 이사의 임기가 3년이 끝나 가지고 바로 연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또 3년 이내에 직무상 잘못이 있어 가지고 해임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解任權者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教育部長官 安秉永** 그것은 이사회에서 할 수밖에 없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정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당연히……

○**趙贊衡委員** 당연히 明文化해야지요. 임명권이 있으면 解任權도 있어야지 그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教育部長官 安秉永**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일단 사람을 선임하고 장관이 뜻을 같이 하는 이런 과정은 장관이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든가 이사회에서 자기들이 그냥 결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두 의지가 함께 연결이 된 것입니다.

○**趙贊衡委員** 장관은 내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라고요.

○**教育部長官 安秉永** 다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못

알아들을 리가 있습니까?

○趙贊衡委員 임명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만일 직무상 잘못이 있을 때는 解任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教育部長官 安秉永 다른 출연연구기관의 입법례를 저희들이 그대로 보고 있고요, 해임에 관해서는 따로 없는데 이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이 해임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정말 잘못을 하는 경우에 문제를 제기하면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理事會에서 해임하겠지요, 그것은 당연스러운 과정입니다.

○委員長 姜在涉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 중에서 千正培 委員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過怠料規定에 대해서 원래 원안은 처음부터 법원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千委員,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千正培委員 교육부문제가 아니라 아마 앞으로 법체계를 다 이렇게 만들 모양이지요?

○委員長 姜在涉 그렇다면 제가 볼 때 타 법안하고의 여러 가지 균형문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교육부장관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教育部長官이 過怠料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규정과 마찬가지로 조문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어요?

○教育部長官 安秉永 예, 좋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그러면 우리 千正培 委員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趙贊衡 委員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 별척의 강화나 아니냐 하는 문제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趙委員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장인 제가 전문위원하고 교육부하고 법무부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지금 있는 그대로 별 문제가 없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대로 하고 조금 뭘 고쳐야 되겠다면 그 부분을 고치기로 하고 그래서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과 12항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결은 이런 검토를 거치고 이따가 의결정족수가 되면 그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과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3.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案(代案)(通商産業委員長 提出)

(16시17분)

○委員長 姜在涉 의사일정 제13항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案代案을 상정합니다.

南平祐 議員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通商産業委員長代理 南平祐 통상산업위원회 南平祐 議員입니다.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案代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姜在涉 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新技術·知識集約型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案」과 金景梓 議員, 金元吉 議員, 朴光泰 議員, 孫世一 議員, 金令培 議員, 趙淳昇 議員, 朴尙奎 議員外 72인이 발의한 「中小新技術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案」은 그 취지와 내용이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이 두 건의 법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새로운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인력·기술·입지 등 생산요소들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金融調達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기금의 관리자는 당해 기금의 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인·허가 절차없이 바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또는 新技術事業投資組合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벤처기업에 대한 外國人의 株式取得限度를 폐지하여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한도의 제한없이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株當 액면가를 5,000원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벤처기업은 당해 기업주식의 액면가를 100원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포함하여 개인

또는 개인들로 구성된 조합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租稅減免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국·공립대학의 校地 등 국·공유지의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영구시설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업전용단지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벤처企業育成에 관한特別措置法案을 당위원회가 제안한 대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在涉 다음 南平祐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專門委員 李文載 유인물 19페이지, 안 부칙 제4조는 高等教育法案이 국회의결을 거칠 것을 예상하고 규정된 것이라 동 법안이 현재 教育委員會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동 條를 삭제하였고 그외에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燦柱 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朴燦柱委員 제가 조금 이것이 자구수정이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4조에 있어서 ‘벤처企業에 대한 基金의 投資 등’해 가지고 基金管理基本法에 의한 基金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인·허가 절차에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國民年金 같은 것,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여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허용하는 것입니까?

○通商産業委員長代理 南平祐 大統領令으로 정해지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燦柱委員 아니, 그런데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이내의 資金……’ 그렇게 되어 있어서 비율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국민연금이 투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개 인·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基金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예컨대 국민기금, 물론 처음에 투자할 때에는 누가 손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는데 국민기금과 같이 지금 적자, 거의 한 2010여년 되면 기금 자체가 고갈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기금들에

대해서도 가령 주무부처라든지 또는 관계 인·허가에 관련되는 기관들의 통제도 없이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다든지 한다면 빨리 망해 버려라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주 방만하게 되어 가지고 그러한 기금을 마련한 立法趣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通商産業委員長代理 南平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당초 政府提案立法이었기 때문에 정부측에서 답변하시면 더 소상히 이해가 되시겠는데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委員長 姜在涉 예.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통상산업부차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출자를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제4조1항에 있는 것처럼 基金을 관리하는 자가 출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基金의 운용자, 운용 관리자가 전체 운용의 수지 상태를 봐 가지고 출자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출자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1항의 뜻은 基金의 운용관리자가 출자를 하고 싶을 때 基金의 운용계획을 다시 바꾼다든지 하는 이러한 절차를 이 特別法에 의해서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基金을 출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정을 감안을 해서 제1항1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金’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燦柱委員 좌우간 基金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統制裝置는 없다는 이야기구만요.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아닙니다. 그것은 基金의 관리자가 출자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朴燦柱委員 관리자가 책임진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基金의 관리자는 基金 전체의 운용에 대해서 책임을 원천적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朴燦柱委員 아니, 그런데 국민연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책임진 경우가 있었습니까?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그것은 일단 基金의 관리자가 基金운용 전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법체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니까

여·야 다 합의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넘어온 의원입법인데……

千委員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正培委員 여기 10조에 주식 1株의 금액을 100원이상으로 낮춰 놓았어요. 이것이 왜 상법의 5,000원 이상을 100원으로 대폭 낮출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어 봅니다.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저희 벤처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資本金이 대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자본금이 적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場外市場 같은 데에서 상장되어 가지고 거래가 되려면 어느 정도 적절한 주식의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千正培委員 주식의 총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이 상장이 가능하고 이런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말하자면 5,000원을 100원으로 내리면 한 50분의 1의 규모만 되도 창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군요.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주식의 숫자가 많게 되면 지금 상장의 요건이 적어도 10%정도는 상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라 하더라도 주식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流動性을 나중에 환수하는데 상당히 쉽게 벤처기업들이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南平祐 議員께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4. 産業標準化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 15. 에너지利用合理化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 16. 海外資源開發事業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 17. 大韓鑛業振興公社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 18. 意匠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 19. 商標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16시28분)

○委員長 姜在涉 의사일정 제14항 産業標準化法中改正法律案, 제15항 에너지利用合理化法中改正法律案, 제16항 海外資源開發事業法中改正法律案, 제17항 大韓鑛業振興公社法中改正法律案, 제18항 意匠法中改正法律案, 제19항 商標法中改正法律案을一括上程합니다.

통상산업부차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존경하는 姜在涉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産業標準化法中改正法律案, 에너지利用合理化法中改正法律案 등 6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産業標準化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그 동안의 정부주도 산업표준화체제를 民間主導로 개편함으로써 산업표준화를 통해 산업기술발전을 선도하고 나아가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제품에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民間認證機關을 지정하여 그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품질인증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산업표준 관련단체가 단체표준을 제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만 하고 자율적으로 團體標準 品質認證業務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단체표준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기술발전속도 및 산업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년이내의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暫定標準制度를 도입하여 첨단기술분야의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응하고 성급한 표준화에 따른 리스크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관계행정기관의 長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품의 규격, 기준을 정할 때에는 通商産業部長官과 협의하도록 하여 제품의 규격이나 기준이 산업표준과 부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利用合理化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에너지사용기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 공급자의 에너지 수요관리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원천적인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통상산업부장관은 장기적으로 예측되는 에너지 수요량의 일부를 감축시키기 위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에너지 공급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을 강화하였으며 둘째, 통상산업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利用合理化基本計劃의 내용에 에너지 가격의 예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에너지 사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현재에는 최저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전기냉장고 등 에너지사용기기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동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명령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低效率器機에 대하여는 생산 및 판매금지까지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사용기기의 효율화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海外資源開發事業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 및 국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企業活動規制緩和에 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해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전환된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조항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통상산업부장관 등 주무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미수교국의 감소와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未修交國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진출제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고지원 범위에 현행의 해외자원개발 조사비, 외국과의 기술교류비외에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지원사업을 추가하고 국내 수요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개발자원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해외자원개발사업이 企業活動規制緩和에 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해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완화된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신고제의 취지에 맞게 罰則規定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大韓鑛業振興公社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국내광물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한광업진흥공사의 資本金을 증액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사업중 정부지정이나 위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法定事業으로 명문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鑛業資金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재 1,500억원인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정부위탁에 의해 수행중인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석·골

재산업지원업무를 공사의 고유업무로 전환함으로써 공사의 기능과 역할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였으며 둘째,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광물자원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응용분야에 대한 용역 및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意匠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제품디자인의 신속한 변화추세에 대응하여 유행성이 강한 품목의 의장에 대한 意匠無審査登錄制度를 도입하는 등 의장권의 신속한 權利化에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유행성이 강한 일부 품목의 의장에 대하여는 일정한 출원방식상의 요건만을 심사하고 신속히 등록토록 하는 意匠無審査登錄制度를 도입하고 의장무심사등록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不實權利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심사등록된 의장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등록후 3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후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둘째, 창작자의 의장권 확보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출원전에 학술단체, 박람회 등에서 공개된 의장에 한하여 6월이내에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개의 사유에 관계없이 6월이내에 출원하면 모두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의장등록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출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意匠無審査登錄出願을 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出願書로 여러 개의 의장을 함께 등록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多意匠登錄出願制度를 도입하였으며 넷째, 의장보호의 국제적인 수준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意匠權의 존속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商標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상표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상표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상표관련 국제조약 가입의 선행조건을 이행하고 주요국의 제도동향에 부응해 나감으로써 상표제도의 선진화·국제화를 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표의 등록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기호·문자·도형 등의

평면적 상표만을 등록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도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商標登録出願人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국내외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출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상표등록출원시 상품류구분마다 지정상품을 정하여 출원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둘 이상의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한 개의 出願書에 일괄 기재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종전에는 商標權者 또는 商標登録出願人이 원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도 연합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聯合商標制度는 이미 국제적으로 채택되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상표선택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産業標準化法中改正法律案, 에너지利用合理化法中改正法律案, 海外資源開發事業法中改正法律案, 大韓鑛業振興公社法中改正法律案, 意匠法中改正法律案, 商標法中改正法律案 등 6개 법안을 통상산업위원회에서 회부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5.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韓利憲·金忠一·徐勳·趙鎮衡·金榮駟·張永喆·玄敬大·金杞載·金鎮載·李國憲·李康斗·白南治議員外 10人 發議)(계속)
- 6. 宅地所有上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韓利憲·金忠一·徐勳·趙鎮衡·金榮駟·張永喆·金杞載·金鎮載·李康斗·白南治議員外 10人 發議)(계속)
- 7. 韓國道路公社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 8. 大韓住宅公社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 9.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 10.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案(政府提出)(계속)
- 11.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政府提出)(계속)
- 12.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 13.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案(代案)(通商産業委員長 提出)(계속)

○委員長 姜在涉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시기 전에 조금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원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를 오락가락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되었다 안 되었다 자꾸 이렇기 때문에 마침 되어 있는 순간에 지금까지 한 것을 미리 의결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아까 다 질의하고 종결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宅地所有上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제7항 韓國道路公社法中改正法律案, 제8항 大韓住宅公社法中改正法律案, 제9항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은 전문위원의 檢討意見を 우리 委員會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修正案대로 나머지 부분은 原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법안들이 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해서 더욱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韓國教育課程評價院法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우리 委員會案으로 받아들이고 千正培 委員 등이 제기한 문제도 반영하여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 제13항 벤처企業育成에관한 特別措置法案 이상 두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우리 委員會案으로 받아 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修正案대로 또 나머지 부분은 原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건의 법률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産業標準化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15. 에너지利用合理化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계속)

16. 海外資源開發事業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계속)

17. 大韓鑛業振興公社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계속)

18. 意匠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19. 商標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委員長 姜在涉 그러면 원 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文載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産業標準化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페이지 및 42페이지,

첫째, 案 제10조의4 제3항은 韓國産業規格表示業務가 民間認證機關에 의한 인증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증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는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인 제10조의4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인증기관에 대한 보고 및 문서비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案 제20조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유인물 61페이지, 案 제43조제2항에서는 통상산업부장관이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過怠料 賦課·徵收權者가 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案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가능한 것이므로 朱書한 바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외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利用合理化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는 유인물 19·20페이지, 案 제1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에너지공급자는 案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공급자가 아닌 案 제12조제1항의 에너지공급자를 의미하므로 이를 분명히 하였으며 그외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海外資源開發事業法中改正法律案입니다.

첫째, 유인물 20페이지, 案 제5조제1항 후단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후 신고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면서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現行 施行令에서는 경미한 사항 대신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朱書한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수정하여 법문표현을 간결히 했습니다.

둘째, 유인물 31페이지, 案 제24조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해외자원을 개발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5조에서는 변경신고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외자원을 개발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외 大韓鑛業振興公社法中改正法律案, 意匠法中改正法律案, 商標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는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검토보고중 朱書部分은 제5호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思哲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思哲委員 지금 KS마크에 관해서 認證機關을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대체로 인증기관으로서 어떤 것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KS에 대한 연구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표준협회 또는 전기·전자시험연구원, 화학시험연구원 등 약 12개 정도 기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思哲委員 각 분야별로 그렇게 지정을 하는 건가요?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그렇습니다.

○李思哲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朴燦柱 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朴燦柱委員 産業標準化法中改正法律案 제10조3에 인증기관 지정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안 10조의4 각호에 기재된 부정한 방법의 인증을 할 때에는 단순히 취소만 할 수 있지 罰則條項이 없지요?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예, 취소만 할 수 있습니다.

○朴燦柱委員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認證機關을 취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법률안이 규정하고 있는 인증기관의 핵심적인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원천적인 처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朴燦柱委員** 그런데 부정한 것이, KS마크 비슷한 것이 남발이 된단든지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식으로 남발해 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문책 같은 것도 안 하고 무슨 제재도 안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마련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저희는 일단 KS제품이 유통되는 단계에서도 저희가 랜덤 샘플링식으로 항상 그것을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 잘못 표시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상당한 잘못된 인식을 주는 것은 비교적 조기에 발견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燦柱委員** 그러면 엉터리 KS 인증을 한 경우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할 생각입니까? 만일 그렇게 엉터리 KS認證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든가 한다면 그러한 것을賠償하기 위한 어떤 基金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인증기관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출된 제품에 대한 규격을 심사를 해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그러한 규격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는 저희의 市販品調査機能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런 認證機關들의 업무로서 KS에서 정하는 그런 기준에 맞는 그런 규격이 제대로 심사되도록 하는 것은 보장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燦柱委員** 그러면 인증제도가 분야별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의 통합된 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입니까?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KS 표시의 분야를 지금 12개 기관에 각각의 專門性에 따라서 인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규격에 대한 審査能力機能은 저희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朴燦柱委員** 좌우간 엉터리 인증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받아도 어쩔 수 없는 셈이 되겠네요?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일단 피해의 규모는 저희는 그렇게 크지 않리라고 봅니다. 사전적으로 規格審査를 충분히 하고 표시를 하게 하고 또 일단

표시가 되어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市販品 調査를 꾸준히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은 조기단계에서 지적이 되고 교정이 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燦柱委員** 그러면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大韓鑛業振興公社法 있지 않습니까? 자본금을 지금 확충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대한석탄공사는 적자가 많은데 대한석탄공사라든지 또는 사업합리화사업단 그런 것들을 통·폐합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본을 충실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大韓石炭公社의 赤字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기관과 통합을 했을 때는 아마 정상적인 기관의 경영이 완전히 어려워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석탄공사 자체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끌고 가면서 어느정도 석탄에 대한 構造調整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처리 여부를 결정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趙贊衡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贊衡委員** 차관, 장관은 어디 가셨어요?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장관께서 지방에 지금 출장을 가셨습니다.

○**趙贊衡委員** 중요한 법률을 이렇게 몇 개씩 내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다른 데를 갔습니까?

여기 이번 개정안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8조 5항을 삭제했지요?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그렇습니다.

○**趙贊衡委員** 삭제한 이유가 뭐니까?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이 조항은 저희가 이 법에서 새로이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이 조항이 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趙贊衡委員** 그러니까 왜 폐지가 됐습니까? 18조 5항이 “통상산업부장관은 에너지 소비효율을 표시하는 기자재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그런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자가 효율표시를 유도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것이 아닙니까?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이것은 저희가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하고 있었던 조항입니다마는 시·도지사에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92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에서 폐지될 때까지 효율표시위반의 사유로 공표한 사례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집행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업활동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를 했던 것입니다.

○趙贊衡委員 그러면 18조는 에너지효율표시기자재이고 19조6항의 에너지효율등급표시기자재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에너지등급표시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기자재에 대해서 자동차라든지 냉장고 등을 포함해서 등급을 구분하는 것이고 에너지소비효율표시는 보일러라든지 비교적 소비자하고 직결은 되지 않는 그런 품목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러니까 기자재의 차이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19조6항의 경우는 공표된 일이 그 동안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저희가 최저효율기준에 미달되어서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49개 업체, 126개 모델로 발표가 됐습니다. 필요하시다면……

○趙贊衡委員 아니, 19조6항을 아세요? 19조6항은 “19조2항·4항의 규정에 위반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공표한 사례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그것은 저희가 공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제품이 49개 업체, 126개 모델입니다. 1997년4월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50호로……

○趙贊衡委員 그러면 그 경우 제조업자가 얼마나 되고 수입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서 구분한 것은 지금 리스트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원하신 것처럼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러면 18조5항에 따라서 공표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通商産業部次官 韓惠洙 없었습니다.

○趙贊衡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마는 정족수가 안 되어서 이따가 의결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차관께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꾸어서 黃性均 議員님께서 오래 기다리고 계셔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29. 社會福祉事業法改正法律案(代案)(保健福祉委員長 提出)

30. 老人福祉法改正法律案(代案)(保健福祉委員長 提出)

31. 生活保護法中改正法律案(代案)(保健福祉委員長 提出)

32. 韓國韓醫學研究所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16시57분)

○委員長 姜在涉 의사일정 제29항 사회복지사업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노인복지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생활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한국한의학연구소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一括上程합니다.

존경하는 黃性均 議員님께서 나오셔서 29항부터 31항까지 세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委員長代理 黃性均 보건복지위원회 黃性均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사회복지사업법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개정법률안, 생활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대안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서 요약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社會福祉事業法改正法律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간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등 사회복지 현실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의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1·2·3 등급으로 법에 규정하며 社會福祉士의 專門性を 提高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국가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임원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추가하고 임원 취소사유를 명확히 하고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겸직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기본재산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보장하였습니다.

셋째,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의 중앙협의회와 그 지부를 각각 독립법인으로 합과 아울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보급 및 사회복지사 자질향상을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법정단체로 하고 넷째,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시설설치·운영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의 제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받은 후원금품의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신설하며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老人福祉法改正法律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도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소득, 건강, 여가 등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先進的인 老人福祉體系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10월2일을 노인의 날,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 공경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전국민연금이 실시되어도 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하여서 敬老年金制度를 도입하여 이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인보건복지시설의 종류를 기능중심으로 재편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하고 있는 무료양로 및 요양시설의 이용 대상자를 정원의 일정범위내에서 최저소득층 노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만성퇴행성 질환을 가진 노인 특히 치매·중풍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요양·보호할 專門療養施設 및 老人專門病院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의 주거의 편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老人福祉住宅에 대한 임대 및 분양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노인지역봉사지도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끝으로 生活保護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실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자가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生活保護對象者의 範圍에 노인, 아동, 임산부, 근로능력 상실자 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를 포함하였고,

셋째, 最低生計費를 규정하고 매5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1일까지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보호실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후견기관을 지정·운영토록 하고 자활후견기관은 자활공동체를 조성·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읍·면·동에 生活保護委員會를 신설하고 전문가와 피보호자의 참여를 넓혔으며 생활보호처분에 대하여는 서면외에 구두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지급된 보호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한 차원 높은 거보를 내딛는 법안들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在涉 黃性均 議員님의 진지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오늘 다른 공무 때문에 부득이 불참을 양해해 달라는 사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양해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나오셔서 한국한의학연구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部次官 全啓休 보건복지부차관입니다.

韓國韓醫學研究所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이사중 韓醫學專門人力을 이사회 전체구성인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법으로 정하도록 해서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원에 두는 이사중 한의사 자격이 있는 자를 전체이사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전문위원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文載 먼저 사회복지사업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의 안 제44조제2항에서는 복지시설운영자가 그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바,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수정하고 아울러 승인절차 등에 관해서는 保健福祉部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7·28페이지의 안 제54조제4호 및 제5호에서는 복지시설의 시설개시의무 또는 휴지·폐지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過怠料 賦課對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동조에서 삭제하고 제58조 과태료규정에 삽입하였습니다.

그외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개정법률안 및 생활보호법중개정법률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소법중개정법률안은 9페이지 부

칙 2조에서 이 법의 개정으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경과조치규정을 두기 위해서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중 朱書部分은 제5호 부록에 실음)

○委員長 姜在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鄭相千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相千委員 黃議員께서 혹시 모르시면 보사부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개정법률안 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잘 몰라서 묻고자 하는데요, 동법 개정안 제18조 任員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제4항에 아마 이사회를 구성하는 모양인데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過半數는 大韓民國 國民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법은 분명히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그야말로 진취적인 취지를 담은 법률인데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외국인이 포함되는 것인지 만일 포함된다면 왜 외국인이 과반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많은 숫자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8조1항 임원에 관한 규정에 法人은 代表理事를 포함한 理事 5인이상과 監事 2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이상이라는 말은 표현상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사구성에 관한 법, 소위 말하면 임원에 관한 규정을 할 때는 다섯 사람 이하면 이하, 미만이면 미만 이렇게 규정을 해야지 다섯 사람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된다면 백 사람까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법률규정에 보통 이런 것은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상이라고 규정한 것인지, 그리고 특히 감사 두 사람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몇 사람까지 둘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5항에 보면 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소위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다섯 사람과 감사 두 사람 이상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얻어 就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표이사만, 원래 이러한 이사회를 구성할 때는 주무관서의 허가를 얻는다든지 승인을 얻는 경우는 있는데 일일이 이사 바뀔 때마다 꼭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理事長한테 맡기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조문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동법 개정안 41조를 보면 施設收容人員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사실 복지시설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각각의 시설은 그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서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이 법 취지로 보면 앞으로 우리가 300명 아니라 1,000명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 하등의 차이도 없이 각각의 시설은 그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법 개정안 44조에 보면 福祉措置에 필요한 費用을 徵收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한 福祉措置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한 地方自治團體의 長 기타 施設을 운영하는 者は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扶養義務者로부터, 생활보호법상의 부양의무자인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 법을 개정하는 취지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의료보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국가 예산에 의해서 보조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데 生活保護對象者까지 일정한 금액을 부담시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비용을 징수하는 대상과 어떻게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까지 비용부담의무자로 규정한 것인지, 이것은 기존법률과 상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部次官 全啓休 차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8조4항 외국인이 임원이 되는 문제와 또 5인이상 이런 규정은 現行法을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행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관한法律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鄭相千委員 외국인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保健福祉部次官 全啓休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실제로 우리 나라에 와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鄭相千委員 이사회에 이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예가 있어요?

○保健福祉部次官 全啓休 예, 있습니다.

○保健福祉部社會福祉審議官 金熙鮮 사회복지심의관입니다.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은 이 법에 규정한 것이 없을 때는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보면 외국인이 과반수 이상 될 수 없다 하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준용해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保健福祉部次官 全啓休 예를 들어서 홀트아동복지재단의 경우는 본래 외국인이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鄭相千委員 앞으로 복지사업이사회인가 구성할 때도 外國人을 포함시킬 것입니까?

○保健福祉部次官 全啓休 우리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굳이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鄭相千委員 외국인이 돈을 기탁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사회에다가 외국인을 넣어야 할, 왜 거기 외국인이 들어가야 되는지 實益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 봐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保健福祉委員長代理 黃性均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6·25사변 당시를 생각하면 국가에서 복지부분을 전부 투자를 하고 설립을 해야 될텐데 그 당시 우리 여건상 외국인이 들어와서 戰後 福祉部分, 고아원이나 또 여러 가지 정부에서 관할할 수 없는 부분에 외국인이 참여했는데 이런 것이 관례에 의해서 지금 되어 있고, 또 인원은 그 구성이 5인이상, 7인이상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인도 되고 5인도 되는데 무제한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사구성에 대한 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나중에 차관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41조에 시설수용인원에 대한 제한을 300명으로 한 것은 지금 한 시설에 많은 사람을 수용함으로써 인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또 종교적인 강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한 시설에 300명이하로 했고, 또 노인이나 아동이나 부녀나 지체부자유자 이런 분들이 수용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수용인원을 300명이상으로 함으로 해

서 많은 문제점을 가져 왔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300명을 제한했고 기존 되어 있는 시설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福祉費用 徵收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호 2종의 범주에 속합니다. 즉, 말하자면 재산은 있어도 소득이 없는 자, 이것을 확대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방세나 국세에 대해서 징수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언적으로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保健福祉部次官 全啓傑 차관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용인원을 黃議員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0인으로 하는 것은 본래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수용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하는데, 피수용자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불충실해질 수 있다 해서 300인 정도 선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수용인원을 제한하자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형시설에서의 부작용 같은 것이 사회적으로 있을 수 있다 해서 300인이라는 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費用徵收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본래 입법취지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生活保護法을 개정하는 가장 주요한 내용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용을 더 징수하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어긋나지 않느냐 하셨는데 여기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실제로 부담능력이 있는데 보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비용을 본인이나 부양의무자한테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징수대상이 되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鄭相千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은 것은 生活保護法에 의한 扶養對象者라고 하는 사람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부양의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부양의무자한테 돈을 거두겠다고 했는데 생활보호법상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입니까? 부양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生活保護對象者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部次官 全啓傑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鄭相千委員 그것은 부양의무자고요.

○保健福祉部次官 全啓傑 실제로 부양을 해야 하는데 부양을 안 하는 경우..

○鄭相千委員 안 하는 경우에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양자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보호대상자가 됩니까? 그런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保健福祉部社會福祉審議官 金熙鮮 실무자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에게 비용을 물리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정에서 보호하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장애인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에 입소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실비를 징수해가지고 家庭保護보다는 시설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비용징수입니다. 가정에서 보호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보호를 해주는 대가로 예를 들면 한 달에 10만원을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鄭相千委員 그것은 제한된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保健福祉部社會福祉審議官 金熙鮮 예, 제한된 사람입니다.

○鄭相千委員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에 그런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保健福祉部社會福祉審議官 金熙鮮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시설에 보호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鄭相千委員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특별한 경우에 집에서 부양할 수 없는 성격의 사람들을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 그 시설이 필요로 하는 비용을 의무자한테 부담을 시키겠다 이런 설명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保健福祉部社會福祉政策室長 李鐘尹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저희가 이 개정법에서 생활보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고 팽개치는 경

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혀 보호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경우에 우선 필요하니까 국가가 보호를 해주고 나중에 부양의무자로부터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李思哲委員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여태까지는 안 해줬는데 이제는 지정하고 보호해주고 비용을 징수하겠다 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部社會福祉政策室長 李鐘尹 예, 그렇습니다.

○鄭相千委員 그러니까 실무자의 이야기를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부양의무자라고 해서 괄호를 하고 ‘生活保護法上の扶養義務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한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법의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생활보호법 몇 조에 있어요?

그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 생활보호법에 규정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아요?

○保健福祉部社會福祉審議官 金熙鮮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괄호의 扶養義務者라는 것은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는 범위가 넓습니다. 생활보호법상의 부양의무자는 범위를 좁혀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생활보호법상의 부양의무자를……

○鄭相千委員 아니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묻는 것은 이런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은 집에서 부양할 수 없는 특수 사정이 있어서 시설에 보호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보호법의 몇 조에 그런 사람이 규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部次官 全啓傑 3조에 있습니다.

보호대상자의 범위라고 해서 1항에서 “이 법에 의한 保護對象者는 扶養義務者가 없거나 扶養義務者가 있어도 扶養能力이 없거나 扶養을 받을 수 없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鄭相千委員 바로 내가 묻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生活保護對象者라고 하는 것은 부양해 줄 의무자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을 전제로 하는 법이 生活保護法이거든요.

○保健福祉部次官 全啓傑 2항에 다시 나옵니다. “第1項이 정하는 保護對象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도 生活이 어려운 者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보호의 일부가 필요하다고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者” 이들도 보호대상자들로서 부분적으로 보호를 하게 되겠습니다.

○鄭相千委員 그러면 그런 사람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하면 생활보호법상의 부양의무자 이런 것을 법에 그런 식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保健福祉部社會福祉審議官 金熙鮮 여기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시설에 입소시켜서 보호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생활보호법상의 부양의무자는 생활보호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법상의 규정과는 달리 그 부양의무자를 좁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촌이라든가 6촌이라든가 4촌까지 넓히지 않고 2촌 이내의 친족까지만 부양의무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용징수를 할 때도 4촌이라든지 범위를 넓히지 않고 2촌 이내 친족에 한해서 扶養義務의 책임을 진다 이런 뜻입니다.

○鄭相千委員 그러니까 범위를 넓혀서 부담을 시키든 어떻게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꼭 정부예산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좋은데 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에 관련된 규정을 했느냐,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徵收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놓은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 돈을 징수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할 수 없어요. 하려면 明文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18조4항에 “理事의 過半數는 大韓民國 國民이어야 한다” 이런 것을 넣어 놓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나라도 GNP 소득 1만불을 갖는 그야말로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고 큰 소리는 치고 있는데 외국인들 복지시설…… 옛날 얻어먹던 그 시절과는 이제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지난 날의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을 해야지요.

그리고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4항에 대한 것도 “理事의 過半數는 大韓民國 國民이어야

한다”는 것도 이것이 외국 법률이라면 이 문맥이 통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이사회에 구성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외국인이 과반수가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법률에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이사가 되는데 개중에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러한 경우에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이 조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이사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은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야지요.

이것은 외국의 복지시설 이사에 관한 규정처럼 인식이 되는 조문입니다. 어떻게 大韓民國 法律에 외국인에 대한 이사회 구성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되어야지……

나는 이것이 잘못된 규정이라고 봐요.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을 과반수로 해야 된다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委員長 姜在涉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는 잘 하시는데 법률안이 넘어왔을 때 보면 지난 번에도 한번 孫鶴圭 長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오늘도 보면 부처의 국장들이 실무자들이 한 분한분 불쑥불쑥 나와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보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돼요.

아까 鄭相千 委員께서 질의하신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이 분 말씀 저 분 말씀이 서로 상충이 되고 들어봐도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전문위원하고 얘기해 보면 그 조문이 명쾌합니다. 내가 보니까 설명을 할 때 鄭委員님이 납득하도록 설명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우리 국민이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하는 이 표현은 鄭相千 委員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외국인이 반을 넘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법에 맞다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표현 방식이 옛날 얻어먹던 시절의 표현 비슷하고 또 남의 나라 법을 번역해 놓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鄭委員님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오늘 각 議員發議 法案에 대해서 다 의원들이 바쁘다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오늘 黃性均 議員님께서 직접 오셔서 진지하게 제안설명도 해주시고 했는데 黃議員님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그 조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을 고쳐보도록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相千委員 알겠습니다. 4항만은 바꿉시다.

○委員長 姜在涉 예, 그렇게 해주시고 李思哲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思哲委員 노인전문병원을 老人福祉法에 만든다고 했는데 일반병원을 할 때 누구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部次官 全啓然 복지부장관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李思哲委員 그런데 35조에 보면 老人專門病院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노인전문병원이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설치요건을 완화한다든가 제한한다든가 이런 조항도 없이 똑같은데 이 조항을 넣는 취지는 뭐니까?

○保健福祉部次官 全啓然 지금 醫療法에서 의료기관의 종류를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인복지법에서 老人專門病院이라는 용어를 써서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개설할 수 있게 한 것은 말하자면 老人疾患에 대해서 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李思哲委員 의지의 표현입니까? 그러면 가령 여성전문병원을 만든다 그럴 때 그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따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료법에 의해서 종합병원 무슨 병원 다급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을 만든 것은 老人福祉法을 제정하는 의지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까?

黃議員님, 그렇습니까?

○保健福祉部委員長代理 黃性均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면 정신병원, 노인병원 또 소아병원, 재활병원 이런 특수병원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외에 각 科가 다 있는 종합병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설치인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정신질환자 같으면 정신질환에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나 여러 가지 상담심리사라든지 이런 등등을 두고 있고 노인들의 특수병에 대한 병원에 대한 규제가 나와 있습니다.

○李思哲委員 그러면 지금 이 조항이 없으면 노인병에 관한 각 분야, 치매 중풍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병원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까? 노인치료만 전

문으로 하는 병원을 현행 제도와 법규정 하에서 만들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保健福祉部次官 全啓傑** 현행 제도에서는 종합 병원은 종합병원이고 병원은 병원이지 노인전문병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 기관에서 편의상 남성클리닉이다 이런 얘기는 합니까만 법적으로는 노인전문병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李思哲委員** 그러면 법적으로 하는 것과 사실상 여성전문병원이다, 노인전문병원이다 하는 차이는 뭐니까? 무슨 혜택을 주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保健福祉部次官 全啓傑** 혜택보다도 시설이나 인력 기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환에 따라서 질병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치매의 경우에는 치매에 필요한 특수한 인력이라든지……

○**李思哲委員**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保健福祉部次官 全啓傑** 예.

○**委員長 姜在涉** 千正培 委員 질의하십시오.

○**千正培委員** 社會福祉事業法을 全文改正을 하니까 3조 이것이 원래 있던 조문인지 아니면 이번에 개정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조1항은 社會福祉事業의 내용 등에 관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규정이 먼저 적용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항은 당연한 것인데…… 2항은 그런 특별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항, 2항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마치 현재로서는 다른 법의 규정이 우선하는데 앞으로 그 법들을 개정할 때에는 이 社會福祉事業法에 좀 맞추면 좋겠다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1항, 2항의 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保健福祉委員長代理 黃性均** 1항은 기존에 있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2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 넣은 것입니다.

○**千正培委員** 그런데 이를테면 母子福祉法에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특별규정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일반사회복지사업에 비해서 모자복지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둘 이유가 있어서 두는 것이겠고 그런데 이것이 특별규정을 앞으로 개정할 때는 일반 규정에 좀 부합하도록 해라 이런 것 같아서 2항은 불필요하게 괜히 들어갔다고 보이는데요.

○**保健福祉委員長代理 黃性均** 그런 점도 있겠습니까마는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障得人福祉法이라든가 兒童福祉法이라든가 母子福祉法이라든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법에 대한 원칙적인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항이 바로 그런 의미를 표현을 했고 2항은 각 법에서 어떤 법률개정을 할 때 구체적인 어떤 별도의 사항을 정하면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더라도 이 정신에 맞게끔 해달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千正培委員** 어쨌거나 이것이 헌법도 아니고 같은 법률인데 이 조문에서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 법 개정할 때 과연 이렇게 될지는 의문입니다마는 그런 뜻이라면 알겠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社會福祉事業法改正法律案에 대해서는 아까 鄭相千 委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18조제4항을 ‘外國人인 理事는 理事現員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고치고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老人福祉法改正法律案, 제31항 生活保護法中改正法律案, 제32항 韓國韓醫學研究所法中改正法律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3건의 법률안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4. 産業標準化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 15. 에너지利用合理化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 16. 海外資源開發事業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 17. 大韓鎭業振興公社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18. 意匠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19. 商標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委員長 姜在涉 아까 의결을 못한 부분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産業標準化法中改正法律案, 제15항 에너지利用合理化法中改正法律案, 제16항 海外資源開發事業法中改正法律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大韓鑛業振興公社法中改正法律案, 제18항 意匠法中改正法律案, 제19항 商標法中改正法律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生命工學育成法中改正法律案(李祥義·徐廷和·朴成範·崔秉烈·金炯昨·朴憲基·劉容泰·吳陽順·金浩一·金武星·尹源重·白南治·金道彦·金明燮·黃性均·張永喆·黃圭宣·金泰鎬·權英子·金重緯議員 發議)

21. 通信開發研究院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22.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23. 電波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24. 郵便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25. 電氣通信工事業法改正法律案(政府提出)

(17시45분)

○委員長 姜在涉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0항 生命工學育成法中改正法律案, 제21항 通信開發研究院法中改正法律案, 제22항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中改正法律案, 제23항 電波法中改正法律案, 제24항 郵便法中改正法律案, 제25항 電氣通信工事業法改正法律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0항 生命工學育成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는 李祥義 議員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5호 부록에 실음)

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나머지 5건 법률에 대

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강재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우리 정보통신부를 적극 성원하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通信開發研究院法中改正法律案,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中改正法律案, 電波法中改正法律案, 郵便法中改正法律案 그리고 電氣通信工事業法改正法律案 등 5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通信開發研究院法中改正法律案의 개정취지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보통신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通信開發研究院의 연구사업 범위를 종전의 통신분야의 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정보화와 정보통신 및 우정과 체신금융분야의 정책에 대한 연구 등으로 확대하고 그 기능의 확대에 맞추어서 연구원의 명칭을 情報通信政策研究院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中改正法律案의 개정취지와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자금 및 보증지원을 위해서 현재 한국 소프트웨어産業協會가 共濟事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제자금의 조성이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소프트웨어共濟組合을 설립하고 이 조합으로 하여금 공제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과 공제부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민간기업의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자한 지분을 양도할 수 있고 또 새롭게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電波法中改正法律案의 개정취지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금년 2월에 타결된 바 있는 WTO 基本通信協商의 결과를 반영하여 무선통신사업의 국제화와 세계화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액이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無線

局開設을 허용함으로써 무선국개설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移動無線公衆電話와 移動電話地下中繼器 등 공공이익과 관련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무선국들의 설치가 촉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郵便法中改正法律案의 개정취지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우편사업의 경영합리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우정사업의 경영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편사업의 일부를 민간이 직접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정된지 오래되어 현실의 여건에 맞지 아니하는 郵便物運送法과 軍事郵便法을 郵便法에 통합·정비하여 우편관련법의 체계를 단순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되 그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탁 대신에 민간이 직접 경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경영기법으로 우편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 등 우편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술개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郵便役務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基本郵便役務와 그에 부가하여 제공되는 附加郵便役務로 나누고 그 종류와 이용조건을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우편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종전에는 동일인이 동시에 다량의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우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電氣通信工事業法改正法律案의 개정취지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보통신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工事業市場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고 국내공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업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受給限度額制를 폐지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행정규제를 완화하였으며 認定技術者制度를 도입해 공사업체의 인력부담을 줄이고 공사에 대한 設

計·監理制度와 瑕疵補修保證金制度의 도입 등을 통하여 공사품질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정보통신분야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법의 명칭을 電氣通信工事業法에서 情報通信工事業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종전에는 공사업 허가기준상의 정보통신기술 자격자 요건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공사업계의 인력확보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자 외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경력도 국가기술자격자에 준하여 인정함으로써 업계의 인력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工事業의 세분에 따른 공사업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일반공사업 1등급·2등급 및 별종공사업으로 구분하던 공사업의 종류를 情報通信工事業 1등급 및 2등급으로 단순화하였으며 넷째, 정보통신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업자는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하자를 보수할 의무를 줌으로써 발주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책임있는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종전에는 공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공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입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업체의 자율을 존중하는 협회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通信開發研究院法中改正法律案 등 5개 법률안은 WTO基本通信協商的 타결내용과 정보통신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통신분야에 대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우정사업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우편관련법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정보통신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려는 데 그 기본취지가 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在涉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專門委員 李文載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의 안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소프트웨어事業者'를 '事業者'로 약칭하고 있으나 이 미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등에서 소프트웨어事業者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으며 또한 이하에서는 두 번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약칭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외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電波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는 유인물 3페이지 안 제74조의6의 聽聞條項을 다른 입법례와 맞추어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郵便法中改正法律案입니다.

유인물 21페이지 안 부칙 제3조의 ‘返還郵便物’이란 용어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환부郵便物’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외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電氣通信工事業法改正法律案에 대하여는 법문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였고 生命工學育成法中改正法律案 및 通信開發研究院法中改正法律案은 체계·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千正培 委員 질의하십시오.

○千正培委員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中改正法律案 제13조의11제2항입니다. 아마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共濟組合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損害를 발생시킨 때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이 소프트웨어산업이란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공제조합의 직원이 너무 몸을 사리지 말고 열심히 도와주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그 과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마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정의되고 해석되어야 할 문제이지 여기서 그냥 단순과실이 있는 사람을 책임에서 뺀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수정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아마 앞으로 법원의 소프트웨어산업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한 법해석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인 것이지 이렇게 법이 노골적으로 과실있는 자도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좀 곤란하고 법체계 전반을 상당히 혼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배상을 한다는 것이 법의 대원칙인데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면 대개 지금 일반 법리상의 해석은 거의 고의에 준하는 굉장히 큰 과실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책임을 경감하는 쪽으로 갈 것이 아니고 고의라는 용어를 해

석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조문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후문에 “이 경우 故意로 인하여 損害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責任을 輕減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타당하다면 더더구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중과실의 경우에 책임경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과실이라는 것은 거의 고의나 똑같은 경우의 과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도 있지만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主語가 문장에 없어가지고 누가 어떤 절차로 경감을 하는 것인지, 그냥 소송할 때 법관이 알아서 경감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준다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千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지적하실 이유가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산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형체가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있고 기술은 있지만 도저히 자금동원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보증을 해주는 경우인데 엄격하게 賠償責任을 묻는 제도하에서는 아마 거의 공제조합을 설립한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신용보증이라든지 다른 눈에 보이는 산업들에 대한 공제사업은 그래도 조금 덜 문제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지금 굉장히 리스크 자체를 안고 있는 산업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 만들어졌고 또 故意로 인하여 損害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는 묻는데 그러나 고의성이 없을 때는 조금 줄여줘라 하는 취지입니다.

○千正培委員 누가 줄인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소송에서 법관이 알아서 줄여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인가요?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아닙니다. 배상책임은 저희가 재판까지는 안 가더라도 공제조합을 운영하는 측과 공제조합에 출자한 기구나 사람들이 배상결정을……

○千正培委員 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그런……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그렇습니다.

○千正培委員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注意義務가 있는데 그것을 게을리한 것이 때문에 소프트웨어산업 특성상 주의의무의 정도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과실이라는 개념 자체를 특성을 살려서 해석해야 될 문제지 여기서 과실을 그냥 빼준다고 그러면 거의 지금 우려하신 것과 반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고의만 아니면 아무렇게나 처리하고 막 해도 책임을 지지 않을 우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은 어쨌든 여기 상임위의 修正案은 좀 곤란하고 당초의 원 改正案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電波法中改正法律案 67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7조6항이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이유를 제가 추측컨대 無線局의 許可取消등에 있어서 현행법에는 意見陳述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마 청문으로 바꾸면서 진일보하게 만들어서 뒤에 다른 조문에 의해서 커버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7조6항에 원래 의견진술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안 중에서 무선국의 허가취소에 관해서는 아예 의견진술도 빼면서 그렇다고 청문기회도 주지 않고 오히려 不利益處分을 하면서 당사자의 意見陳述 기회를 박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현행법보다도 민주적 절차면에서는 퇴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무선국의 허가취소는 거의 기술적인 결격요인이 명백히 발생할 때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해서 이의가 있으면 바로 行政訴訟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런 조문을 가지고 별로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빼는 것입니다.

○**千正培委員** 무선국 허가뿐만 아니라 어떤 불이익처분도 처분을 내리는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절차적 정의면에 있어서는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 본인한테 어떤 변명의 기회를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意見陳述의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는 퇴보로 보이는데 이를테면 그 동안에 무선국 허가취소의 경우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봤잖아 별 실효성이 없었다든지 그런 것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문상으로는 퇴보가 분명한데요.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지금 실무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無線局 許可取消件數가 1년에

7,000건에 달합니다. 무선국이라는 것을 무슨 큰 시설을 갖고 있는 이런 무선국으로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전화기 하나 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선국의 자격을 갖는 것인데 예를 들면 電波使用料를 미납했기 때문에 이동전화를 못 쓰게 하는 이런 것이 4,000여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를 가면서 주소가 불명된 것이 2,542건, 무선국 불법운영 58건으로 그러니까 7,000건의 대부분이 전파사용료를 안 냈다든지 이사를 가서 주소가 불명해졌다든가 이런 경우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집행이 안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千正培委員** 건수도 많고 경미한데 그런 애로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郵便法中改正法律案 38조2항입니다.

우편물 취급과 관련해서 정부가 또는 우편 취급자가 손해배상을 책임질 조문이니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문인 것 같은데 지금 2항은 賠償金額에 있어 현행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굳이 情報通信部令으로 바꾸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 느낌으로는 이것은 사실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조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령도 좀 부족하다, 이것은 법에서 배상금액이나 이런 것의 원칙적인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것을 대통령령에서 정보통신부령으로 바꾸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물론 정보통신부에서는 편하고 좋겠습니다마는.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千委員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입장일단이 있는 얘기인데 이것을 大統領令으로 정하면 신속하게 바꾸지 못하는 이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部令으로 하더라도 賠償金額을 줄이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千正培委員** 그런데 부령이든 대통령령이든 마찬가지로 다 정보통신부에서 관장하고 준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은 국무회의까지 가서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예.

○**千正培委員** 그렇다면 역시 국민에 대한 損害賠償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면 당초 있는 것을 그렇게 바꿀 필요까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電氣通信工事業法 21조입니다.

21조1항에 “工事業者가 사망한 때에는 그 相續人은 이 법에 의한 工事業者의 모든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문입니다. 아까 다른 법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참고로 묻겠는데 공사업자는 지금 이 법에 따르면 무슨 인가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그렇습니다.

○千正培委員 그러면 공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르면 共同相續인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대개 승계하기로 해서 신고하면 정보통신부에서는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까, 아니면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공동으로 신고를 하고 공동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까?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답변드리다면 공동상속인들끼리 뭔가 합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千正培委員 그러면 더 나아가서 유언 같은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물론이지요.

○千正培委員 죽는 사람이 아들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도 재산은 마음대로 유언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인데요. 유증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때 정보통신부에서는 이 공사업에 대한 말하자면 인가, 큰 이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認可權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유언에 의해서 그 자식이 아니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한테 넘겨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을 존중해서 무슨 인가권을 유언에 따라서 넘겨줍니까?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제 법률지식으로는 그것은 상속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상속권자가 아니니까 제3자일 경우에는 증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千正培委員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지요.

○委員長 姜在涉 朴燦柱 委員님……

○朴燦柱委員 아까 13조의11 ‘賠償責任等’에 있어서 좌우간 고의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그것은 제 자신으로서의 삭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의사만 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13조7에 있어서 ‘損失補填準備金の積立’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준비금의 사용에 있어 가지고는 공제조합가입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서 적립된 것입니까?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그렇습니다.

○朴燦柱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13조의8에서 “共濟組合은 任員 또는 職員중에서 당해 共濟組合의

業務에 관한 裁判상 또는 裁判외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13조의4의 3호에 있어 가지고는 “소프트웨어事業에 따른 義務履行에 필요한 履行保證” 그런 식으로 공제조합의 사업을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공제조합의 경우에 13조의8에 의해서 代理人으로 선임된 사람은 모든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辯護士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역할을 사실상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행보증을 한다든지 한다면 일반 私人, 사업자의 상대방이 되는 일반 개인들은 공제조합에서 이행보증을 했고 그러니까 아마 사업자하고 공제조합을 동시에 피고로 삼아 가지고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것인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공제조합은 대리인이 나가 가지고 변호사 역할을 해 버린단다. 그러면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인데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이것도 제가 법률지식이 짧습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아무 대리인이나 할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역시 변호사가 필요한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朴燦柱委員 그것이야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고 법률상 代理人이 재판상의 모든 행위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능력이 부족해서 변호사 선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아무리 소프트웨어産業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광범위한 代理權을 줄 수 없는 것같이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여기 法司委에서 의견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千正培委員 이 문제 말입니다. 공제조합의 임원은 지금 등기되지요?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예.

○千正培委員 여기에서는 직원이 있으면 직원은 등기가 물론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배인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상법상으로도 지배인 등기된 사람들 소송행위도 대리하고 하지요. 최소한 이 條文을 존치하려면 무엇인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

람을 지정을 해서 적어도 등기를 하고 등기부상 그런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공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부등본을 떼서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상 행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현재 조문대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완전하게 辯護士 役割을 아무 직원이나 나가서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立法審議官 車有旻 소송대리인이라는 뜻은 본인소송문제에서 본인이 나가서 해야 하는 것을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千正培委員 어쨌든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직원중에 아무나 재판상 대리를 하게 되면……

○立法審議官 車有旻 그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그러나……

○千正培委員 아니, 직원이 할 때는 보통은 단독사건에 한해서 법원으로부터 訴訟代理許可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법조문에 의해서 아예 당연히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같이 보여요. 지배인개념 아납니까? 그러니까 지배인을 하려면 지배인으로 등기를 해야 되고 지배인이라는 사실이 등기부상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조치도 없이 아무 직원이나 나갈 수 있게 더더구나 지배인이면 상당히 높은 임원인데, 임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아무 직원이나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委員長 姜在涉 千委員님, 그것은 제가 알기로 代理人選任 이것이 여기 이 법 뿐만 아니고 建設産業基本法이라든지 또 農業協同組合法이라든지 水産業協同組合法, 信用保證基金法 등등 여러 법에 그와 유사한 표현으로 다 되어 있고 그것이 변호사 업무를 침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안 되어 있는 유사조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고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千正培委員 그러면 정말로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朴燦柱委員 그리고 다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朴燦柱 委員 질의해 주세요.

○朴燦柱委員 郵便法中改正法律案을 보겠습니다. 38조3항 새로 개정되는 것 國際郵便物에 대한 손

해배상의 제한같은 것 그런 것은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제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에 있어서 말입니다.

○情報通信部郵政局長 金東善 지금 현행 國際郵便條約에서 정한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장관이 고시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朴燦柱委員 현재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情報通信部郵政局長 金東善 그렇습니다.

○朴燦柱委員 그런데 다만 명문으로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情報通信部郵政局長 金東善 그렇습니다.

○朴燦柱委員 그러면 2항에서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3항을 구태여 규정할 필요없이…… 국제우편물도 1항에서 규정한 우편물에 속할 것 아니겠습니까?

○情報通信部郵政局長 金東善 대부분 국내우편물에 관한 것이 2항이고요.

○朴燦柱委員 아니, 어디에 국내우편물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좋습니다.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제가 그러면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46조4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지금 현행법은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해서 1항 또는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양벌규정에 의해서 양벌책임을 지우겠다 그런 것인데 지금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법에 의하면 ‘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항이라고 하는 것은 1항만으로 했습니다. 2항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2항에 대해서는 兩罰責任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2항은 지금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미한 경우로 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朴燦柱委員 아니요. 그렇지 않겠지요. 아니, 좌우간 그것은 좋습니다. ‘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 해 놓고 2항에 100만이하니까 양벌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라는 이야기입니까?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예.

○朴燦柱委員 그런다고 해도 양벌규정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지워야하는데요. 좋습니다. 아까 이것은 의문으로 접어두도록 하고요.

○委員長 姜在涉 2항이 삭제되었답니다.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개정안에서 2항이 삭제되었군요. 죄송합니다.

○**朴燦柱委員** 예, 그러니까 왜 삭제를 했느냐 하는 이야기였는데 경미한 것이어서 그렇게 삭제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대로 양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電氣通信工事業法 22조를 보겠습니다. ‘許可가取消된 工事業者등의 繼續工事’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항에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등등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를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해서 시공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6조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66조를 보면 ‘營業의 停止 및 許可의 取消’ 해 가지고 가령 9호에 의하면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를 받지 아니한 때” 또 10호의 경우에는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 또는 指示에 위반한 때” 그랬는데 65조를 본다면 5호에서 “電氣通信基本法 등 關係法令의 規定에 위반하여 施工함으로써 工事を 不實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66조11호에 의한다면 “電氣通信基本法 등 關係法令의 規定에 위반하여 不實하게 工事を 施工한 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부실하게 공사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영업의 정지라든지 허가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속행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처분을 받기 전에 보급을 체결하였거나 처분을 받기 전에 認可·許可를 받은 경우라서 아마 이렇게 공사의 계속성을 보장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朴燦柱委員** 아니, 부실공사가 예상이 되어 가지고 어떤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不實工事を 하고 있는 공사업자에게 계속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사고가 나라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65조는 부실할 우려가 있을 때 그것을 고치라는 是正命令條項이니까요.

○**朴燦柱委員** 그러나 시정명령을 안 들어 가지고 취소까지 하고 있는 판에 공사를 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그렇게 부실공사를 장려를 합니까? 좌우간 그것은 심각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7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의 ‘工事的 瑕疵擔保責任’ 거기에서 37조2항을 보면 “受給人은 다음 各號의 1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瑕疵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擔保責任이 없다.” 그래 가지고 1호는 “發注者가 제공한 재료의 品質이나 規格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호는 “發注者의 指示에 따라 施工한 경우” 3호는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1, 2, 3호에 해당된다는 것만으로 해가지고 담보책임이 없다고 규정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인 줄로 알고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 2, 3호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7조2항의 경우에 있어서 담보책임이 없도록 하려고 하려면 단순히 발생한 瑕疵에 대해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擔保責任이 없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수급인에게 공사를 조잡하게 한 데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그런 식으로 制限的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1, 2, 3호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속행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姜在涉** 부실공사를 장려하는 조문이 있습니까?

○**朴燦柱委員**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委員長 姜在涉** 설마 부실공사를 장려하는 조문이야 만들었겠어요?

○**朴燦柱委員**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장려까지는 안 한다고 하지만 방치를 할 우려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깐 小委員會에 넘겨 가지고 일부만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委員長 姜在涉**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있는 동안에 鄭相千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相千委員** 우리 동료 朴委員 질의는 상당히 까다로운 것인데 나는 쉬운 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장관 과거에 EPB에 오래 계셨고 또 정부통신부장관 되어서 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아주 대단히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정보통신부에서 제안한 법안 가운

데에서 나는 電氣通信工事業法改正法律案에 대한 질의 한 가지를 드리려고 그러합니다.

이 법안 36조에 보면 ‘工事的 竣工檢査’라고 하는 조문이 들어가 있는데 1항에 보면 “工事業者は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工事を 완료한 때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의 節次등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제2항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를 완료한 때 이 말은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시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2항에 “竣工檢査의 節次등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는 어떠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부령에 정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좀 알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장관이 답변할 수 있는 문제 이것을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보면 이것은 장관이 많이 아마 관장을 하신 법률인데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 관한法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기억하지요?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예.

○鄭相千委員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 관한法律에 보면 다른 것은 제외하고 정부가 공사를 맡길 때에는, 정부통신부도 예외는 될 수 없지요. 정부 기관이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競爭入札이 되든 隨意契約이 되든지 간에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은 국가하고 소위 국민이라고 할까 회사라고 할까 이러한 당사자간의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계약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 계약에 의해서 제대로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감리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約定書 契約書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是正命令을 하거나 또는 改修命令을 하거나 또는 손해보상청구를 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 관한法律 제14조에 보면 이 ‘檢査’라는 란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이것은 완공이 되었든 일부 공사가 끝났을 때를 포

함하는 것입니다,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에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전문 기관에 지정해서 필요한 檢査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법에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왜 電氣工事業法의 改正案 가운데 36조에 ‘情報通信部長官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의무규정을 넣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 관한法律에 의해서 당연한 것이예요. 이런 내용을 왜 여기에다가 또 규정을 했느냐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관!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묻고자 싶은 것은 附則입니다.

시행일에 관한 부칙규정을 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정부 개정안의 원안에는 27조1항, 36조, 39조 규정은 98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을 개정안에 넣어놓았는데 이것이 아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한 것을 보면 동법 36조하고 42조에 규정한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1년반 더 연기를 시켜 놓았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36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협회회원으로 가입을 시키는 조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1년반을 연기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 이견이 없고요, 필요하다면 1년반이 아니라 2년 뒤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방금 제가 질의한 42조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부칙에다가 98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다 더 電氣通信工事業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한 그러한 검사를 해서 하자없는 말하자면 不實工事を 막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附則에다가 한 모양인데 이것이 어떻게 常任委員會에서 98년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99년1월1일부터 이것이 반년이나 또 늦춰 놓았거든요. 그러면 정보통신부에서 이러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꼭 들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왜 시행일이 이렇게 자꾸 늦어지도록 이것이 수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설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2조 이 규정을 부칙에서 99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었다고 하

는 이 부칙시행일 규정은 이것은 하등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 관한法律을 보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시행이 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우선 竣工檢査 관련된 것을 7개월 정도 늦춘 것은 이번에 소위 別種工事業者라든가 아주 영세한 사업자들을 1·2등급으로 단순화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기준을 높이는 이런 보안을 하면서 시행준비에 필요한 장비확보랄지 전문인력확보 이런데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서 7개월 정도 猶豫期間을 두었습니다.

○鄭相千委員 그것은 고려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지금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 관한法律에 보면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그런데 鄭委員님이 말씀하시는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은 정부 기관이 發注者가 되어서 하는 계약이고요,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이 사업법은 民間事業者間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사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조항입니다.

○鄭相千委員 아니, 그런 말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36조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공사에 한해서 완료가 되었을 때 竣工檢査를 한번 다시 하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契約自由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契約當事者間的 계약에 의해가지고 당연히 부실공사를 한다거나 어떠한 하자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만든 법률이 바로 이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 관한法律이에요.

그런데 민간업자끼리 계약하는 것을 준공검사를 한다? 그것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개인 상호간의 계약을 정보통신부장관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정보통신시설중에서는 國家基幹通信施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간통신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가 준공검사로 관리해야 될 장거리통신시설이랄지 중요시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契約自由에 의한 兩當事者의 시설검사 이외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정도의 품질수준이 확보되었는지를 검사를 할 필요

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앞으로 정할 제한적인 공사에 대해서 저희 정보통신부 산하의 지방체신청의 전문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鄭相千委員 그러면 그것만 규정을 해야지요.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글썬,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앞으로 어떠한 공사에 대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國家重要基幹通信施設과 관련된 공사' 이렇게 대통령령에 정할 것입니다.

○鄭相千委員 아니, 그것은 장관이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중요기간통신사업에 관련되는 공사라는 것은 국가가 발주하는 것이지 민간인 상호간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사업체는 지금 民間事業者가 많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데이콤이라는 시외 국제전화사업을 하는 그런 순수한 민간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동통신과 관련된 민간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基幹通信事業者라고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내려서 분류를 합니다.

○鄭相千委員 그러나 데이콤이 정보통신 관계 사업을 발주를 할 때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 契約條件이라는 것이 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계약서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관련되는 서류가 작성될 것입니다. 서류가 작성되면 거기에 의해서 그대로, 계약대로 이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發注權者인 데이콤 같은 데서 그것은 계약당사자가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監理者가 또 책임을 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약이 결국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이, 공사가 준공이 되면 계약당사자는 그것 가지고 계약이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보통신부에서 다시 검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법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정부기관이 계약당사자간에 계약한 것을 또 검사를 한다? 그것은 안 되지요.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아닙니다. 情報通信事業이라는 것이 다른 산업과는 달리……

○鄭相千委員 아니, 그것은 정보통신부가 예를 들어서 데이콤이 발주한 국가통신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배려되

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미리 통신사업자에게 제시가 되어야지요.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개인상호간에 계약을 한 것을 政府機關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다 완료한 것을 또 竣工檢査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통신사업은 사업주체를 민간으로 지금 많이 넘겨주고 있지만 通信事業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國家安保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국가기간통신사업자라고 해서 그 기간통신사업자가 하는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鄭委員님, 이것은 자꾸·체계화고는 관계 없는 것 같아요.

○鄭相千委員 아니,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조그마한 일하고 비교해 가지고 생각해도 똑같은 얘기에요. 어떻게 해가지고 契約當事者가 준공검사를 다 완료한 했는데 그것을 다시 政府機關이 또 준공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게 돼요? 국가가 소위 민간업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계약이 체결된 문제라고 그러면 이 36조가 적용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이미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 관한法律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情報通信部長官 康奉均 鄭委員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충분히 미리 알고 와서 대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國家基幹通信網과 관련되는 이런 중요시설은 그 동안에도 저희 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던 한국통신공사가 이런 검사를 해왔답니다. 해왔는데 이번에 通信公社가 민영화촉진에 의해서 政府投資機關에서 폐지됩니다. 그런 것에 맞추어서 대신 우리 체신청에서 국가의 중요한 기간통신시설에 관련된 것은 해야…… 국가 전체, 국가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업주체는 민간사업자들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相千委員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앞으로 잘못하면 계약당사자가 소송을 건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하등 권한이 없어요. 왜 이것을 준공검사를 권한도 없이 할 수가 있나요? 할 수도 없고 만일에 지금 장관 이야기대로 국가통신기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계약을 체결하

기 이전에 이러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데이콤 등에 대한 시공업체가 이러이러한 것을 반드시 계약을 이러이러하게 체결하도록 조건을 제시하든지 이런 지침이 나와야지요. 그것을 사전에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은 데이콤이라고 하는 계약 당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委員長 姜在涉 이렇게 하시지요. 전기통신공사법개정법률안은 법률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니 자꾸 길어지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이 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부족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가 내주까지 열리니까 소위에서 하루이틀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머지 법안은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십시오.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議決定足數가 안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20항부터 24항까지는 나중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항에 대해서는 法案審査第2小委員會에 회부해서 그래서 혹시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고 잘 가다듬어서 모양을 갖추고 또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고, 어쨌든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고 너무 오랜 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26. 産業災害補償保險法中改正法律案(權哲賢議員外 24人 發議)

27. 雇傭保險法中改正法律案(李康熙議員外 20人 發議)

28. 勤勞者의生活向上과雇傭安定支援에관한法律案(政府提出)

(18시43분)

○委員長 姜在涉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을 각각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과 27항에 대해서는 議員發議 法案입니다마는 위원들의 양해가 있어서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5호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의사일정 제28항 근로자의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노동부장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陳 稔** 존경하는 姜在涉 委員長님 여러 위원 여러분!

오늘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10일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마련해준 새로운 노동법 시행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노사에 새로운 勞使文化가 형성이 되고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1년전에 비해서 5분의 1로 주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 제정시 여야합의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 지원 법률을 정부가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 지원과 고용불안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勤勞者의 生活向上과 僱傭安定에 관한 支援施策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토록 하였고 둘째로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강구하였으며 셋째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학자금 융자, 장학금의 지급, 의료비·장례비 융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넷째로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상 우대하는 저축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직예정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職業轉換訓練 또는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훈련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로 사업주가 새로운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후 종전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사업주가 특정한 사업에서 이직한 자를 채용하거나 당해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 중 고령자 또는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장

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법률안의 내용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在涉**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文載** 먼저 産業災害補償保險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4조제1항에서는 내용의 변경없이 표현을 수정하고 있으나 오히려 현행보다 부적절하여 현행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제74조제5항은 성업공사가 공매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은 체계상 성업공사 관련법에서 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5조의2는 내용의 변경없이 표현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僱傭保險法中改正法律案과 勤勞者의生活向上과 僱傭安定支援에관한法律案은 약간의 자구를 수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증개정법률안, 27항 고용보험법증개정법률안, 제28항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 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3건의 법률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 生命工學育成法中改正法律案(李祥義·徐廷和·朴成範·崔秉烈·金炯旣·朴憲基·劉容泰·吳陽順·金浩一·金武星·尹源重·白南治·金道彦·金明燮·黃性均·張永喆·黃圭宣·金泰鎬·權英子·金重緯議員 發議)(계속)

21. 通信開發研究院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22.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

出)(계속)

- 23. 電波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 24. 郵便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 25. 電氣通信工事業法改正法律案(政府提出)(계속)

○委員長 姜在涉 몇 가지 의결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과 21항 통신개발연구원법중개정법률안 이 두 건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제23항 전과법중개정법률안, 제24항 우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案으로 받아들여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기통신공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朴燦柱 委員님 등등의 여러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훈처장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법안이 오면 제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33.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18시52분)

○委員長 姜在涉 의사일정 제33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훈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家報勳處長 朴相範 존경하는 姜在涉 委員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보훈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간 지도편달과 함께 많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同 法律中改正法律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고엽제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이 究明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고엽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월남전 참전 제대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고엽제질병중 버거병과 전립선암이 현재 후유의증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이를 후유증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건성습진 및 무혈성괴사증을 고엽제 후유의증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뇌경색증의 경우 후유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향후 역학조사의 중점 연구대상이 됨에 따라서 현재 뇌경색증과 뇌출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診斷名으로서 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뇌졸중을 뇌경색증과 뇌출혈로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이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在涉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文載 이 법안의 심사결과 체계와 자구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하여튼 무슨 구체범위를 확대해주는 그런 법이시지요?

○國家報勳處長 朴相範 그렇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原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훈처장 고생하셨습니다.

1.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權英子·林鎮出·吳陽順·金映宣議員外 149人 發議)(계속)
2.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中改正法律案(申樂均·李海瓚·鄭喜卿·秋美愛·韓英愛·金한길·李聖宰·朴相千議員外 71人 發議)(계속)

3.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中改正法律案(鄭相千·趙鍾爽·咸錫宰議員外 46人 發議)(계속)

4.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中改正法律案(代案)(法制司法委員長 提出)(계속)

(18시55분)

○委員長 姜在涉 의사일정 제1항 신한국당이 제출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2항 국민회의가 제출한 같은 이름의 법안, 제3항 自民聯이 제출한 같은 이름의 법안, 제4항 우리 법사위원회가 마련한 같은 이름의 代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崔鉛熙 委員長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崔鉛熙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崔鉛熙 委員입니다.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에서 각각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민회의 朴燦柱 委員께서 굳이 이것을 상세하게 보고드릴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委員長 姜在涉 여기 아주 상세한 유인물이 있으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小委員長 崔鉛熙 서면으로 대체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姜在涉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제5호 부록에 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모두 폐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出席委員

姜在涉	崔鉛熙	陸堯相	邊精一
辛卿植	安商守	李思哲	趙贊衡
朴燦柱	千正培	鄭相千	

○委員아닌出席議員

南平祐 黃性均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李 文	載
立 法 審 議 官	車 有	昊
立 法 審 議 官	林 閔	鍾
立 法 審 議 官	閔 東	東
		基

○出席國務委員

教 育 部 長 官	安 秉	永
勞 動 部 長 官	陳 桓	稔
建 設 交 通 部 長 官	李 桓	均
情 報 通 信 部 長 官	康 奉	均

○出席政府委員

教 育 部			
企 劃 管 理 室 長	李 勇	源	
初 中 等 教 育 室 長	鄭 用	述	
高 等 教 育 室 長	張 五	鉉	
教 育 政 策 企 劃 局 長	鄭 相	煥	
地 方 教 育 行 政 局 長	李 基	雨	
平 生 教 育 局 長	辛 晉	基	
教 員 政 策 審 議 官	朴 贊	奉	
教 育 課 程 審 議 官	朴 俞	千	
大 學 教 育 政 策 官	金 永	植	
產 業 教 育 政 策 官	徐 凡	錫	

通商産業部

次 官	韓 惠	洙
次 官 補	秋 俊	錫
資 源 政 策 室 長	韓 竣	皓
企 劃 管 理 室 長	金 弘	經
中 小 企 業 政 策 官	劉 永	祥
資 源 政 策 審 議 官	柳 昌	茂
技 術 品 質 局 長	白 萬	基

情報通信部

次 官	朴 成	得
企 劃 管 理 室 長	李 成	海

情報通信政策室長	鄭 弘 植
情報通信支援局長	徐 榮 吉
郵 政 局 長	金 東 善
政 策 審 議 官	石 鎬 益
保健福祉部	
次 官	全 啓 恣
社會福祉政策室長	李 鐘 尹
社會福祉審議官	金 熙 鮮
家庭福祉審議官	金 明 淑
韓 方 政 策 官	宋 在 聖
勞動部	
企 劃 管 理 室 長	金 相 男
勤 勞 基 準 局 長	金 孫 京
雇 傭 保 險 審 議 官	金 容 達
建設交通部	
次 官	金 建 鎬
次 官 補	李 鄉 烈
運 送 政 策 室 長	康 允 模
住 宅 都 市 局 長	朴 相 彩
住 宅 審 議 官	崔 在 德
道 路 審 議 官	李 秉 憲
土 地 局 長	張 富 市
物 流 審 議 官	池 光 植
科學技術處	
次 官	李 富 植
企 劃 管 理 室 長	李 景 鍾
研 究 開 發 調 整 室 長	宋 鈺 煥
化 工 生 物 研 究 調 整 官	張 相 九
國家報勳處	
處 長	朴 相 範
企 劃 管 理 室 長	張 貴 昊
福 祉 醫 療 局 長	金 晉 述
報 勳 管 理 局 長	朴 鍾 緒
報 償 支 援 局 長	蔡 鴻 起
紀 念 事 業 局 長	朴 成 圭
除 隊 軍 人 政 策 官	金 鍾 成
特許廳	
次 長	金 守 東
審 查 1 局 長	延 元 錫